

朝鮮後期 濟州西北地域 田畝文記의 研究

高昌錫*

차 례

- I. 序 論
- II. 資料의 整理와 解題
- III. 賣買文記의 綜合的 檢討
- IV. 結 論

I. 序 論

이 論考는 北濟州郡 涯月邑 長田里에 거주하는 姜泰福씨 所藏의 田畝賣買文記를 一括하여 정리한 것이다. 筆者는 同宅에 소장된 分財文記 8건을 이미 『耽羅文化』에 소개한 바 있으므로 本稿는 그 後續篇이라 하겠다. 다만 아쉽게 생각되는 것은 紙質의 수명타도 있겠지만 그간 습기와 蟲害 등으로 심하게 손상된 문기들이 있어서, 그 전부를 완전히 정리하여 여기에 소개할 수 없는 점이다. 그러나 본 매매문기 중에는 지금까지 필자가 제주도 내에서 보아 온 문기 중 가장 오래된 壬辰倭亂前, 즉 선조 20년(1587)의 문기가 전해오고 있음이 주목된다. 한두 글자가 탈락되기는 하였으나 그런대로 완벽한 문서였다. 즉 내용은 不問하더라도 우리 나라에는 그리 흔치 않게 오래된 귀중한 문서로 생각되는 것이었다.

본 姜氏宅은 濟州入島始祖 姜渭亮이 燕山君 10년(1504) 甲子土禍에 연루되어 관직을 버리고 漢陽을 떠나 濟州 寧坪에 정착하면서 비롯되었다. 그뒤 孫子代인 姜

* 제주대학교 사학과 교수

1) 拙稿 : 「朝鮮後期 濟州地方 分財文記의 研究 -長田里 姜泰福氏 所藏文記를 중심으로-」(I) 『耽羅文化』 18,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1997. pp. 215~244.

彦俊에 이르러는 一徒洞의 속칭 막은골(塞洞)로 옮겨 살다가 그의 아들인 姜繼男 때에 애월읍 上加里로 이주하였고, 또 姜大翁 때에 와서는 지금의 長田里로 이주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壬辰亂 때 평양·의주 등지로 宣祖가 播遷할 때 扈從한 功勞로 同王 38년(1605) 宣武原從功臣에 策勳된 姜取瓚도 이 집안 출신이다.²⁾

이 글에서는 먼저 解讀이 가능한 125건의 매매문기를 정리하여 해제하고, 다음으로 이들 文記가 갖는 성격을 여러 모로 분석하여 조선후기 제주지방의 사회·경제사적 측면을 아울러 부각시켜 보려 한다(정리 부분의 < >은 탈락된 부분, []은 誤字 부분이며, 그 안의 글자는 필자 나름으로 탈락된 글자수에 맞게 복원 내지 바로잡아 본 것이다).

II. 資料의 整理와 解題

(1) 萬曆十五年丁亥 正月二十三日 姜繼男處明文

右明文事段 費用所致以 祖上流來田 向只員 □庫合 粟捌升落只 四標段 東奴巨連田 南小路 西同山 北奴保斤田 及木橋旨員 參庫并 粟肆斗捌升落只 四標段 東北同山 南牧場築<城 혹은 塙?> 西大林小路 四標各各分明爲在田庫 價本段 肆禾雄牛壹首 及雜穀貳石 准計捧上<爲遺> 同人處 永永放賣爲乎矣 日後良中 了孫中 雜談是去等 持此文記 告官辨正爲乎事

田主 奴 召卍卜(左手寸)

證人 許永琛(手 決)

證人 李世豪(手 決)

筆執 文應德(手 決)

宣祖 20년(1587) 정월 23일에 田主人 奴 손복[召卍卜]³⁾이 姜繼男에게 토지를 賣渡

2) 晉州姜氏濟州念通岳派功臣門中會 : 『宣武原從功臣錄卷解義』 耕信印刷社 1994. 이 책자의 翻譯과 解義는 전적으로 筆者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발간사에는 잘못 소개되어 있다.

3) 손복[召卍卜]의 '卍'은 『韓國漢字語辭典(一)』(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1993, p. 710, 716)에 의하면, "口訣에서 받침으로 표기하는 우리말의 자음자 'ㄴ'을 나타내는 글자로, 『諺』의 생략체 '卍'에서 온 變體"라고 하였다. 즉 우리말의 '손'을 표기하기 위하여 召와 卍을 결합하여 만든 글자로, 召의 음 '소'에, 口訣에서 쓰는 卍의 'ㄴ'을 결합하여 '손'이 된다는 것이다.

하면서 작성해 준 문서이다. 要用所致로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向只員의 몇 곳을 합한 粟[조] 8되지기와 木橋旨員의 粟 4말지기를 4살배기 雄牛 1마리와 잡곡 2섬을 그 값으로 받고 영원히 放賣한다는 내용이다.

(2) 〈順治拾壹年〉甲午 參月初伍日 姜斗煥〈處明文〉(44cm×39.5cm)

右明文事段 要用所致以 祖上傳來爲在 登子員 茅草田庫 柒片合 貳斗伍升落只 肆標段 東同山 南西北小路 肆標分明正爲在田庫 價本段 粟穀壹石 執雌牛皮壹令 交易捧上爲遣 同人前 永永放賣爲乎矣 本文記段 他田地并付乙仍于 許給不得爲去乎 日後子孫中 若有□□□□□□□□ □□□□ 告官下正事

田主 奴 先元(左手寸)
證 奴 有得(左手寸)
證 南至壽(手 決)
筆執 徐以毅(手 決)

孝宗 5년(1654) 3월 초 5일에 田主人 奴 先元이 姜斗煥에게 토지를 매도하면서 작성해 준 문서이다. 要用所致로 조상 때부터 전해 오는 登子員의 茅草田(속칭 새왓) 7파니(片, 드랭이)를 합한(粟種?) 2말 5되지기 밭 값으로 粟穀 1섬과 雌牛皮(암소 가죽) 1섬을 交易해 받고 영원히 방매한다는 내용이다. 本文記는 다른 밭이 함께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넘겨 주지 못한다고 하였다.

(3) 順治拾壹年甲午 陸月貳拾陸日 姜斗煥處明文(45.5cm×38.5cm)

右明文事段 矣身受食還上 納官爲難仍于 母邊家坐圍田果 相換爲在 加樂里以□邊愁九水員 粟壹斗付只田庫 四標段 東小路 南沒官田及婢足生田 西婢足金田 北奴應男田 四標爲等如分明爲在田庫 姜斗煥亦中 永永放賣爲遣 價本段 拾貳石折定穀參石 准計捧上爲去乎 後次 子息同生族類等 爭望隅有去等 此文記內乙用良 告官下正事

田主 牧書員 高汝云(手 決)
訂人 奴 先元(左手寸)

4) 雌牛皮(암소 가죽) 1섬의 1섬은 털이 있는 가죽을 세는 단위로 張과 구별된다. 즉 『度支準折』皮物 注에 「有毛曰令 無毛曰張」이라 하였다. 그리고 本文記는 그 전 賣買時에 작성된 舊文記를 말한다.

訂人 奴 有得(左手寸)
筆執 徐以毅(手 決)

孝宗 5년(1654) 6월 26일에 田主人 濟州牧의 書員 高汝云이 姜斗煥에게 작성해 준 토지매도 證書로서, 官으로부터 꾸어 먹은 還上(俗音 환자)를 납부할 수가 없어서 外家로부터 물려 받은 家坐圍田⁵⁾과 相換한 加樂里 愁九水員의 粟 1말부치기를, 殺食 3섬을 받고 방매한다는 것이다.

(4) 順治拾壹年甲午 <탈락>(41.5cm × 24cm)

右明文事段 要用所致 □□□□ □□□□ 母埋置價 祖上田 里內南邊員 皮車伍斗付 只田庫 四標段 東南姜大雄家 西邊馬億悅田 北邊朴斤田 四標爲等如 分明正爲在田 庫乙 同人亦中 永永放賣爲去乎 後次 遠近一族同生等 相爭雜談爲去等 持此文記內 乙用良 告官辨正爲乎事

田主 長子 奴 德男(左手寸)
次子 奴 德生(左手寸)
次子 奴 (탈락)
(筆執 탈락)

孝宗 5년(1654)에 田主人 奴 德男이 某人에게 토지를 賣渡하면서 작성해 주었던 문서이다. 요용소치로 某某 지경에 어머니를 매장한 값으로 마을 남쪽에 있는 祖上 田 皮車 5말부치기를 방매한다는 내용이다.

(5) 順治拾壹年甲午 拾壹月貳拾貳日 明文(36cm × 34.5cm)

右明文爲臥乎事段 要用所致以 洞來田員 父邊祖上靑草田 陳荒粟種陸升付只 肆標段 東奴大卜田 南夫先申田 西奴白伊卜田 北婢古永只田 肆標爲等<如>分明正田庫乙 四寸姪[姪]夫金夢一處 永永放賣爲遺 價本段 陸升木三十八尺壹正乙 依數捧上爲去乎 後次 吾矣近族子息等 相爭偶爲有去等 此文記內乙用良 告官辨正事

5) 家坐圍田은 家坐外田과 같은 뜻으로, 집이 앉은 위치를 중심으로 그 주위를 빙 둘러 에워싼 텃밭, 즉 속칭 '우영'을 말한다. 四標 중의 沒官田은 필요에 의해 官에서 몰수한 토지, 곧 官田을 말한다.

朝鮮後期 濟州西北地域 田畵文記의 研究

田主 許繼申(左手寸)

訂人 奴 石仇只

筆執 高守看(手 決)

孝宗 5년(1654) 11월 22일에 田主 許繼申이 4촌 姪夫人 金夢一에게 토지를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문서이다. 요용소치로 아버지로부터 물려 받은 洞來田員의 靑草田(속칭 출왓) 粟種 6되지기 값으로 옛새 무명(六升木)⁶⁾ 1필 38척을 받고 팔아버린다는 내용이다.

(6) <順治拾陸>年己亥 參月初貳日 姜斗煥處明文(46cm×48cm)

右明文事段 艱難所致以 母邊祖上傳來(畊食)爲乎矣 次子益堅衿給爲有在 同子尾禮條段置 未及爲有齊 女矣身如此凶年 生利極難乙仍于 未勒堂員 粟種壹斗伍升付只田 四標段 東邊奴文金田 南邊南承壽田 西邊賣者田 北邊高廷好田 四標(爲)等如分明正 爲在田庫 價本段 雄牛貳首 壯雌牛貳首等 准計捧上爲遣 同斗煥處 永永放賣爲去乎 幸有萬間 他子息及遠近族類中 雜談有去等 持此文記內乙用良 告官下正爲乎事

田主 文召吏(左手寸)

訂人 夫善信(手 決)

訂人 韓承淑(手 決)

筆執 李松⁷⁾(手 決)

孝宗 10년(1659) 3월 초 2일에 田主人 文召吏⁷⁾가 姜斗煥에게 토지를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문서이다. 가난한 소치로 흉년을 당하여 外家에서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 오며 갈아먹던 未勒堂員의 粟種 1말 5되부치기 값을 雄牛 2마리와 壯雌牛 2마리를 합하여 4마리를 그 값으로 받고 팔아버린다는 것이다.

(7) 康熙四年乙巳 十月初□日 姜斗煥前明文(44cm×48.5cm)

右明文事段 要用所致以 祖上流來田庫乙 准蓮池國屯馬飲水次 退場竝□庫代 沒官田 愁仇井員 柒負參束 東小林 西奴分千 南奴德男 北奴汝云 怪泉味員 月字田 伍負肆

6) 六升木の 升은 '새', 즉 피륙의 날을 세는 단위로 여든 올을 한 새로 친다. 木은 무명을 뜻한다.

7) 文召吏의 召吏는 良民의 아내를 뜻하는 말로 召史라고도 쓰며, 俗音은 '조이'이다.

束 東小路 西南姜受璜 北金汝碑 貳庫四標分明政[正]爲在田庫 價本段 正木貳拾貳
正 准計捧上後 右人前 永永放賣爲乎矣 本立案[文記]段 餘田并付仍于 許給不得爲
去乎 日後良中 子孫族類中 若有雜談是去等 持此文記告官下正爲乎事

田主 奴 巨 男(左手寸)

證人 李松 昱(手 決)

證人 奴 厚 千(左手寸)

筆執 夫厚一(手 決)

顯宗 6년(1665) 10월 초에 田主人 奴 巨男이 姜斗煥에게 밭을 팔면서 작성해 준 문서이다. 准蓮池*의 물을 國屯馬에 먹이려고 뒤로 물린 목장 몇 곳 대신에 沒官田인 愁仇井員의 7負[짐] 3束[못]*과 怪泉味員의 月字田 5負 4束 등 두 밭 값으로 正木 22필을 계산해 받고 팔아버리되, 本文記는 다른 밭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 넘겨 주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8) 康熙肆年乙巳 拾貳月貳拾伍日 徐起元處明文(40.5cm×38.5cm)

右明文事段 要用所致以 妻初謁日宴時 洞內居生 玄得禮許給 冊食爲如乎 水由里以
北邊 泥田員乾番 租種柒升付只番 四標段 東南賣者番 西金□□田 北李景光番 四標
爲等如分明爲在番庫乙 價本段 木綿參正 准計依數捧上爲遺 同徐起元亦中 永永放□
□□□ 後次他人仲[中] 爭望人有去等 持此文記內乙用<良> 告官下正事

番主 姜 得 厚(手 決)

證人 洪 大 雲(手 決)

證人 文內 口同(左手寸)

8) 准蓮池는 「濟州三縣圖」의 5소장 북쪽에 '准蓮池'라 표기되어 있다.
9) 負와 束은 結負法의 단위이며, 朝鮮王朝의 稅法의 기본이 되는 것이다. 즉 結부법은 토지의 면적과 토지의 수확량을 二重으로 표시하는 計量法이다. 禾穀의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화곡 1握을 把[줌]라 하고, 10파를 束[못], 10속을 負[짐], 100부를 1結[먹]이라 하였는데, 이것이 동시에 토지의 면적을 말하는 단위가 된 것이다. 結부제가 무너지는 朝鮮말엽에 日人에 의하여 實測된 각 道의 1결당 坪數의 평균은 다음과 같다. <「韓國財務經過報告」 光武 9년(1901)>
전남 5,732평 전북 5,885평 충북 5,945평 경남 6,352평 경북 6,994평 충남 7,435평
경기 8,498평 강원 9,920평 황해 10,399평 평북 10,635평 평남 11,651평
함북 12,077평 함남 12,100평

筆執 文 秀 邦(手 決)

顯宗 6년(1665) 12월 25일에 畵主人 姜得厚가 徐起元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해 준 문서이다. 내용은 요용소치로 妻의 初謁日¹⁰⁾ 잔치 때, 동네에 사는 玄得禮가 許給하여 갈아 먹던 水山里北邊 泥田員(흙밭, 습한 밭)의 乾畵(속칭 강답) 租種 7되부치기 값으로 木綿[무명] 3필을 계산해 받고 팔아버린다는 것이다.

(9) 康熙柒年 拾壹月初四日 姜斗煥處明文(34.5cm×34cm)

右明文事段 要用所致以 涯月先黃堂員 皮車二十伍斗付只田庫 價本段 木綿拾疋 准計捧上爲遣 同人處 永永放賣爲去乎 後次 子孫中雜談之弊 則持此文告官下正事

田主 白筆執 文以博(手決)

顯宗 9년(1668) 11월 초 4일에 田主人 文以博이 자필로 姜斗煥에게 밭을 팔면서 작성해 준 문서이다. 요용소치로 涯月 先黃堂員의 皮車 25말부치기 값으로 木綿 10필을 받고 팔아버린다는 내용이다.

(10) 康熙九年庚戌 正月貳拾捌日 高甫難金〈處〉明文(29cm×38.5cm)

右明〈文〉事段 要用所致以 祖上傳來畵食爲如乎 加樂里以南邊 加叱□路員 皮車柒斗付只 四標段 東鄭善永田 南棟山 西奴德終田 北奴永佑田 四標爲等如分明正爲在田庫 價本段 四升麻布陸拾尺 准計捧上爲遣 同甫難金處 永永放賣爲去乎 日後吾矣子息遠近族叔中 雜談之弊是去等 持此文以 告官辨正爲乎事

白筆執 田〈主〉 全泰亨(手決)

顯宗 11년(1670) 정월 28일에 田主人 全泰亨이 자필로 高甫難金에게 토지를 매도하면서 작성해 준 문서이다. 내용은 요용소치로 조상 대대로 전해 오며 갈아 먹던 加樂里南邊 加叱□路員의 皮車 7말부치기 값으로, 四升麻布[넉새 삼베]¹¹⁾ 60척을 계산해 받고 팔아버린다는 내용이다.

10) 初謁日은 謁舅日을 말하는 것이며, 新婦가 시집에서 처음으로 媢父母를 뵈는 날이다.

(11) 康熙拾年辛亥 柒月拾陸日 姜斗煥處明文(32cm × 40cm)

右明文事段 要用所致以 祖上衿得爲在 里內員代田 皮牟壹石付只田 四標段 東故高益全田及小路 南高甫難金及奴夫男田 西梁厚先及婢厚今□□□北□生男田 四標爲等如分明正爲在田庫 價本段 壯□□□首 准計捧上爲遣 同斗煥處 永永放賣爲乎矣 本文記段 他物并付乙仍于 許給不得爲去乎 後次遠近族類中 雜談隅有去等 此文記內乙用良 告官下正事

田主 高太崑(左手寸 年十三)
訂人 率外祖母 文召吏(右手寸)
訂人 三寸 高甫難金(左手寸)
訂人 姜 福 信(右手寸)
筆執 李 松 立(手 決)

顯宗 12년(1671) 7월 16일에 田主인 高太崑이 姜斗煥에게 작성해 준 토지 賣渡證書이다. 요용소치로 조상 때부터 유산의 몫으로 받은 里內員의 代田(堡田, 집터왓) 皮牟 1섬부치기 값으로 건장한 소를 받고 영원히 방매한다는 내용이며, 本文記는 다른 발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 넘겨 주지 못한다고 하였다.

(12) 康熙拾壹年壬子 陸月初伍日 姜斗煥處明文(30.5cm × 33.5cm)

右明文事段 身爲牧子 去三月分 矣身□□□屯馬 右人麥田良中 麥種玖斗付只田庫 □□付只 喫破爲乎等以 穀玖回報給事 結□□□矣如 矣貧殘之漢 一馱置得□□□□乙仍于 勢不得已 洞內田員 草田肆庫合 粟壹斗貳升付只田 四標段 東梁繼興田 南朴鐵順田 西姜碩賓田 北朴鐵順田 四標分明正爲在田庫 穀玖馱價 永永成文放賣爲乎矣 本文記段 他田并付乙仍于 不得許給 後有雜談爲去等 此文記內乙用良 告官下正事

田主 奴 太好(左手寸)
訂人 韓承淑(手 決)
筆執 李松立(手 決)

11) 四升麻布[넉새 삼베]는 보통 '넉새베'라고 하며, 석새베 보다 품질이 좀 나은 베를 말한다. 『朝鮮王朝實錄』英祖 39년 12월 甲申條에는 「納布名色甚多 而價無定數 致有民弊 不可不酌定 續布則每疋五錢 四升布則每疋一兩 五升布則每疋二兩 六七升以上 遞加酌定頒布 如有違式者 請依上納木布用好律 著爲定式」이라 한 기록이 보인다.

顯宗 13년(1672) 6월 초 5일에 田主人 奴 太好가 姜斗煥에게 토지를 賣渡하면서 작성해 준 것이다. 牧子된 몸으로 지난 3월께에 자신이 <관리하던> 屯馬가 姜斗煥의 보리밭에 들어가 麥種 9말부치기 중 그 얼마를 먹어치웠으므로, 곡식 9짐을 갚아 줄 것으로 약조를 했으나 집이 가난하여 1짐도 얻을 수가 없는 탓에, 洞內田員의 草田 4곳을 합한 粟 1말 2되부치기를 곡식 9짐 값으로 文記를 작성하여 영원히 팔아버린다는 것이다. 다만 本文記는 다른 밭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 넘겨 주지 못한다고 하였다.

(13) 康熙拾貳年癸丑 捌月初拾日 姜斗煥處明文(35cm×35cm)

右明文事段 子奴金男參兄弟等 牧子以 名字同色馬 他無出處乙仍于 適枝邊許給爲在 頓田員 皮牟參石陸斗付只田 四標段東邊梁戒興田 南邊婢應生田 西邊故崔望生田 北邊鄭先榮田 四標爲等如 分明正爲在田庫 價本段 壯雌馬壹匹 細木貳疋 皮牟壹石 准計捧上爲遺 同姜斗煥亦中 永永放賣爲去乎 僥倖萬日 日後良中 遠近一族之中 雜談 倘有去等 持此文記內乙用良 告官下正爲乎事

田主 奴 金山(左手寸)

訂人 夫立

訂人

筆執 李松立(手 決)

顯宗 14년(1673) 8월 초10일에 田主人 寺奴 金山이 姜斗煥에게 토지를 賣渡하면서 작성해 준 문서이다. 아들인 奴 金男 3형제가 牧子로 자신 이름의 同色馬를 달리 마련할 길이 없기에, 嫡子와 支子에게 넘겨 주었던 頓田員의 皮牟 3섬 6되부치기 밭을 壯雌馬 1필과 細木¹²⁾ 2필, 皮牟 1섬을 그 값으로 받고 팔아버리는 내용이다.

(14) 康熙拾貳年癸丑 玖月初貳日 姜斗煥處明文(39.5cm×31cm)

右明文事段 子奴禿卜亦 別玄字牧子以 名字同色馬 他無出處之路乙仍于 洞內良班前 今生去勢多台星雄馬 貸出納點之後 價本段 □同姓三寸處 如奴負薪水息[汲] 卽遺言 田 別居幕基外田 參庫并 牟陸斗付只 四標段 東金武取處 南李松立田及奴中卜處 西

12) 細木은 올이 가늘고 고운 무명으로, 『大同野乘』 27, 亂中雜錄 3, 甲午條에 「夏四月 民間困窮 大牛之價 不過二斗米 細木之直 未滿數升粟」이라 한 기사가 보인다.

婢海淑田及高廷豪處 北買者田 及果背其旨員 皮牟陸斗付只 四標段 東小林 南西無
主大旨 北金擊漢田 及果小加路員 皮牟捌斗付只 四標段 東奴今同 南奴夫男 西金武
淑等田 五庫合 貳斗付只田庫乙 同姜斗煥亦中 永永放賣爲乎捺 本文記并以 許給爲
去乎 萬間 某邊之中 雜談偶有去等 此文記內乙用良 告官下正事

田主 婢 閑 生(右手寸)
訂 子 奴 禿 卜(左手寸)
訂 四寸 婢 閑 心(右手寸)
筆執 五寸姪塔 李松立(手 決)

顯宗 14년(1673) 9월 초 2일에 田主人 婢 閑生이 姜斗煥에게 토지를 賣渡하면서 작성해 준 문서이다. 아들인 奴 禿卜이 別玄字¹³⁾ 牧子로 자신 이름의 同色馬를 달리 마련할 길이 없기에, 동네 良班에게서 多台¹⁴⁾의 今生雄馬를 貸出하여 點檢할 때에 바친 뒤, 값은 同姓三寸에게 奴[종]와 같이 떨나무를 하고 물을 길렀으므로, 즉시 遺言한 別居幕 터의 外田(별거막을 빙 둘러 에워 싼 밭) 3곳을 합한 皮牟 6되부치기와

13) 『耽羅志』와 『南征博物』에는 屯에 있는 말[馬]을 표시하는 글자의 수가 모두 58字(屯)로 되어 있다. 이를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別玄字는 대정현의 차귀소 소속 馬屯이었다).

濟州	第一所	天·地·玄·黃·宇·宙·出	7字	
	別牧場	天·地	2자	別防所 소속
	第二所	洪·荒·月·盈	4자	朝犬所 소속
		日·吳	2자	禾北所 소속
		結	1자	
	第三所	辰·宿·致·雨·露	5자	
	大三所	爲·麗	2자	洗月所 소속
第四所	張·寒·來·暑	4자		
大一所	往·秋·收·冬·藏·閑·霜·金·生	9자	明月所 소속	
大靜		玄·黃·宇	3자	拳瑟所 소속
		列·別玄	2자	遮歸所 소속
旌義	第一所	李·奈·芥·藍·海·河·淡	7자	
	第二所	鱗·潛·羽·翔	4자	
	第三所	龍·師·火	3자	首山所 소속
山屯		菜·重·圖	3자	西歸所 소속
	牛島			監牧官 소속 別防所 소속

14) 多台의 말은 '태성말', '태상백이' 라고도 하며, 이마에 흰 곳이 있는 말을 말한다.

果背其旨員의 皮車 6되부치기, 果小加路員의 皮車 8되부치기 등 5곳을 합한 2말부치기 받을 本文記와 아울러 영원히 팔아버린다는 내용이다.

(15) 康熙十二年癸丑 九月初五日 姜集(處明文)(47.5cm×37.5cm)

右明文事段 矣子奴億男亦 名字同色馬徵捧時 他無出處(乙)仍于 同人前 赤多參禾雌馬壹疋乙 (貸)得善點後 價本段 南橋旨員 柒庫合 粟參斗付 四標段 東同山 南奴仁卜田 西奴卜斤田 北鄭弘得田 四標分明爲在田庫 右人前 永永放賣爲乎矣 本文記段 他田并付乙仍于 許給不得爲去乎 後日 了孫族類中 雜談爲去等 此文告官辨正爲馱乎事

田主 婢 億 生(右手寸)
子 奴 億 男(左手寸)
證人 奴 內 卍熙(左手寸)
證人 夫 男(手 決)
筆執 李 輯(手 決)

顯宗 14년(1673) 9월 초 5일에 田主인 奴 億生이 姜集에게 토지를 賣渡하면서 작성해 준 문서이다. 아들인 奴 億男이 자신 이름의 同色馬를 徵捧할 때에 달리 마련할 길이 없는 탓으로, 同人에게 赤多雌馬 3살배기 1필을 貸得하여 점검을 잘한 뒤, 값은 南橋旨員의 7곳을 합한 粟 3말부치기를 팔아버리되, 本文記는 다른 받이 함께 기재되어 있으므로 넘겨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16) 康熙拾肆年乙卯 拾月拾捌日 姜斗煥處明文(32.5cm×35cm)

〈右明文〉事段 子億男名字同色馬 他無出處乙仍于 同人處 駮雌馬禾參壹匹(乙 貸得納)點後 他無報給乙仍于 南橋旨員 肆庫合 □□貳斗付只 四標段 東已賣爲在買得田 南奴卜斤及從先田 西奴金孫田 北鄭弘明田 四標(爲)等如分明田 同人亦中 永永報給放賣爲去乎 後次 雜談有去等 此文記內乙用良 告官下正事

田主 婢 億 生(右手寸)
子 奴 億 男(左手寸)
訂人 奴 內 卍化(左手寸)
筆執 李松立(手 決)

肅宗 원년(1675) 10월 18일에 田主人 奴 億生이 姜斗煥에게 토지를 賣渡하면서 작성해 준 문서이다. 자식인 奴 億男이 자신 이름의 同色馬를 <徵捧할 때에 달리 마련할 길이 없는 탓으로>, 同人에게 騮雌馬 3살배기 1필을 <貸得하여 점검에 드린> 뒤, 값을 값을 길이 없기에 南橋旨員의 4곳을 합한 某種 2말부치기 받을, 同人에게 갚아주는 형식으로 영원히 팔아버린다는 것이다.

(17) 康熙十四年乙卯 十一月十八日 姜集處明文(43cm×37cm)

右明文事段 至此凶年 生利爲難乙仍于 家父衿得爲有在 南橋旨員 □庫合 粟參斗柒升付只 標東已賣□□爲有在 買者田 南奴卜近及從先田 西小路 北白太□田 標各各分明田庫 價本粟 粟穀伍石 正木□疋 准計捧上爲遣 右前 永永放賣爲去乎 本文他田并付仍于 許給不得□□□ 日後 雜談爲去等 此文告官下正事

田主 婢 億生(右手寸)

證人 夫男(手 決)

筆執 李緝(手 決)

肅宗 원년(1675) 11월 18일에 田主人 奴 億生이 姜集에게 토지를 賣渡하면서 작성해 준 문서이다. 흉년이 되어 살아 나가기가 어려운 탓으로 南橋旨員의 粟種 3말 7되 부치기를 粟穀 5섬과 正木을 그 값으로 받고 팔아버리되, 本文記는 다른 말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 넘겨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18) 康熙十四年乙卯 十二月十一日 四寸孫姜集亦中<明文>(41cm×44cm)

右明文事段 七十年老 連值大無之年 資生爲難乙仍于 父主前登科別得耕食爲如可 □□折半 分衿爲有如在田 上加樂里以南邊 別入山員 皮牟陸石付只田 其中北邊終半參石付只 女婚成婚日良中 □□□□召吏處別給田 四標段 東夫善信田 西大路 南□□□氏田 北婢先生田 四標各各分明正爲在田庫良中 價折正木三十疋折定 皮穀捌石及二禾雌馬□□ 准計捧上爲遣 東北邊參石付只 右姜集處 永永放賣爲去乎 日後或有子孫族類中 雜談者是去等 持此文記告官辨正爲乎事

田主自筆 宣略將軍行訓練院判官 姜取瓚(手決)

肅宗 원년(1675) 12월 11일에 田主人 宣略將軍 行訓練院 判官 姜取瓚이 자필로 4

촌 孫子 姜集에게 토지를 賣渡하면서 작성해 준 문서이다. 70세의 노인으로 연이은 흉년을 당하여 살아 나갈 수가 없는 탓으로, 아버님이 科擧에 급제하였을 때 특별히 준(別給) 上加樂里 南邊 別入山員의 皮牟 6섬부치기 밭 중, 東北邊의 3섬부치기를 正木 30필로 환산하여 皮穀 8섬 및 2살배기 雌馬를 그 값으로 계산해 받고 팔아버린다는 것이다.

(19) 康熙拾陸年丁巳 參月初柒日 姜斗煥處明文(31cm×40.5cm)

右明文事段 要用所致以 父主前買得畊食爲如可 矣身□□□□爲在田庫 高內岳南邊員 皮牟貳石付只 及西邊 粟種壹斗付只 貳庫合爲 牟貳石粟壹斗付只田庫 四標段 東居升里水 南小路 西大磊 北高內岳 肆標爲等如分明爲在田庫 價本段 駟雄馬不參壹匹乙 准計捧上爲遣 同斗煥處 本文記并以 永永放賣爲去乎 後此[次]良中 遠近同生了息族類中 雜談有去等 持此白筆文記內乙用良 告官辨正事

白筆執 金武淑(手決)

肅宗 3년(1677) 3월 초 7일에 田主인 金武淑이 자필로 姜斗煥에게 토지를 賣渡하면서 작성해 준 문서이다. 요용소치로 아버님에게 매득하여 갈아먹던 高內岳 南邊員의 皮牟 2섬부치기 및 西邊 粟種 1섬부치기 2곳을 합한 皮牟 2섬, 粟 1섬부치기를 駟雄馬 3살배기 1필을 그 값으로 받고 本文記와 아울러 영원히 팔아버린다는 것이다.

(20) 康熙拾陸年丁巳 拾月初肆日 姜斗煥處明文(41.5cm×54cm)

右明文事段 要用所致以 妻母前成婚別得爲在 加樂里以南邊 松樂員 粟一斗付只田乙 妻五寸叔夫姜斗煥處 永永放賣爲遣 價本段 步兵木壹疋 及雌鹿皮壹令 捧上爲遣 永永放賣爲去乎 此後 雜談之弊是去等 文記并以辨正事

白筆執 田主 朴時筏(手決)

肅宗 3년(1677) 10월 초 4일에 田主인 朴時筏이 자필로 姜斗煥에게 토지를 賣渡하면서 작성해 준 문서이다. 요용소치로 妻母로부터 成婚 때에 별도로 받은 加樂里 南邊 松樂員의 粟 1말부치기를 妻五寸叔夫인 姜斗煥에게 팔아버리고, 그 값으로 步兵木¹⁵⁾ 1필 및 雌鹿皮 1승을 받는다는 내용이다.

15) 步兵木은 굵고 거칠게 짠 무명으로, 예전에 步兵들의 옷감으로 쓰이었다.

(21) 康熙十八年戊午 九月二十一日 姜斗煥前明文(35.5cm×36.5cm)

右明文事段 矣父亦 牙兵之役爲如乎 兵物成備次 同人前 藥丸具拾貳兩 代出爲有如可 矣父身死後 他無報給之物仍于 白只旨南邊 南山員 薄田二庫合 粟肆升付 四標東同山 南小林 西同山 北奴民先田 四標分明爲在田庫 右人前 永永報給放賣爲乎矣 本文記段 他田并付乙仍于 許給不得爲去乎 後此良中 雜談爲去等 持此文記內乙用<良> 告官辨正事

田主 婢 申化(右手寸)
證人 夫男(手 決)
筆執 李楫(手 決)

肅宗 4年(1678) 9월 21일에 田主人 婢 申化가 姜斗煥에게 토지를 賣渡하면서 작성해 준 문서이다. 아버님이 牙兵의 役으로 兵物을 마련하기 위해 同人에게 藥丸(화약과 탄환)을 갖추려고 20냥을 대출하였다가, 아버님이 사망한 뒤 달리 갚아 줄 물건이 없는 탓에, 白只旨 南邊 南山員의 薄田(척박한 밭) 2곳을 합한 粟 4되부치기를 영원히 갚아 주는 형식으로 팔아버리되, 本文記는 다른 밭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 넘겨주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干支 戊午는 17년에 해당하며, 康熙 18년은 己未이다. 여기서 間지를 따랐다.

(22) 康熙拾玖年庚申 八月拾參日 妻族下姜集處明文(46.5cm×46cm)

右明文事段 要用所致以 文先男處買得爲有在 和樂員 皮牟肆石付只田庫 四標段 東金潤玉田 南甫石田 西棟山 北官田 四標爲等<如>分明正爲在田庫乙 價本段 步木拾伍疋 準計捧上爲遺 本文記并以 同姜集處 永永放賣爲去乎 後次 或有雜談者 則持此文記告官下正事

田主 哨官 趙繼胤(手決)
證 姪女婿 哨官 玄得亮(手決)
筆執 同姓三寸 哨官 姜斗煥(手決)

肅宗 6年(1680) 8월 13일에 田主人 哨官 趙繼胤이 妻族下 姜集에게 토지를 賣渡하면서 작성해 준 문서이다. 요용소치로 文先男에게 買得한 和樂員의 皮牟 4섬부치기 값으로 步木¹⁶⁾ 15필을 받고 本文記와 함께 팔아버린다는 내용이다.

(23) 康熙貳拾參年甲子 五月拾貳日 姜集處明文(43.5cm×48.5cm)

右明文事段 要用所致以 妻母主前別得爲有在 加樂里□□員 皮牟參石付只田庫 標東高成□田 西南賣者田 北李輯田 及妻男金繼武處買得□ 別入山員 皮牟參石付只 標東奴夫男田 南西北買者田 兩庫四標分明爲在田庫 價本段 戶婢眞(탈락)乙 准計捧上爲遺 同人處 本文記并以 永永放賣爲去乎 若有族類中 雜談是去等 持此文記告官下正事

田主 金潤玉(手決)

證人 金海先(手決)

筆執 高景勳(手決)

肅宗 10년(1684) 5월 12일에 田主인 金潤玉이 姜集에게 토지를 賣渡하면서 작성해 준 문서이다. 요용소치로 妻母님으로부터 別得한 加樂리에 있는 皮牟 3섬부치기 및 妻男 金繼武에게 買得한 別入山員의 皮牟 3섬부치기 2곳을 戶婢 某로 그 값을 계산하여 받고 本文記와 아울러 영원히 팔아버린다는 내용이다.

(24) 康熙貳拾肆年乙丑 九月初伍日 姜集處明文(36.5cm×36.5cm)

右明文事段 矣外邊祖專[傳]來佃食爲在 埋叱洞泉員 粟種陸升付只田庫 四標段 東金海興田 南□泉田 西文先男田 北白太赫田 四標爲等如分明正爲在田庫乙 同人處 放賣爲遺 價本段 所食還上太壹石 出處無路乙仍于 太壹石及價布壹疋等物乙 准計捧上後 永永放賣爲去乎 後此行有雜談遠近一族同子中 相爭之弊是去等 持此明文內乙用良 告官辨正爲臥乎事

田主 奴 金孫(左手寸)

筆執 成白雲(手決)

肅宗 11년(1685) 9월 초 5일에 田主인 奴 金孫이 姜集에게 토지를 賣渡하면서 토지를 賣渡하면서 작성해 준 문서이다. 外家에서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오며 갈아 먹던 埋叱洞泉員의 粟種 6되부치기 밭을 콩 1섬과 價布¹⁷⁾ 1필을 받고 팔아버리는 내용

16) 步木은 步兵에 딸린 軍保로부터 받아들이는 무명으로, 『朝鮮王朝實錄』 仁祖 17년 6월 己酉條에는 「諫院啓曰 近來兵曹步木捧納之際 雖四十二三尺 猶以尺短點退 外方之人 不能堪命 皆以爲色官奉職不謹」이라 하였다.

이다. 밭을 파는 이유는 官으로부터 꾸어 먹은 邊上인 콩 1섬을 마련할 길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25) 康熙貳拾玖年庚午 拾貳月貳拾伍日 高泰義處明文(45cm×48cm)

右明文事段 要用所致以 古達里 矣祖上傳來 耕食爲如乎田庫 皮牟玖斗付只 四標段 東奴□□□ □□□□ □姜以璜田 北姜渭成田 四標爲等如分明正爲有如乎 同高泰義處 價本價布□疋捧上爲遣 永永放賣爲去乎 後次 雜談者是去等 持此文記內乙良用〈良〉告官下正事

白筆執 田主 高應雲(手決)

肅宗 16년(1690) 12월 25일에 田主人 高應雲이 자필로 高泰義에게 토지를 賣渡하면서 작성해 준 문서이다. 要用所致로 古達리에 있는 祖上 대대로 전해 내려오며 갈아 먹던 皮牟 9말부치기 밭을 價布 몇 필을 받고 팔아버린다는 것이다.

(26) 康熙參拾壹年壬申 □月初捌日 金□□處明文(34cm×43cm)

右明文事段 加樂里以南邊 □□員貳庫合 粟種柒升落只 四標段 東□□田 西及北小路 南東山 四標〈爲〉等良分明田庫乙 價本段 步兵〈木〉壹疋 粟太並壹石 准計捧上爲遣 同人處 永永放賣爲去乎 後此[次]同生族類中 相爭有去等 此文記內乙用〈良〉告官下正事

田主 白筆 高瓊(手決)

肅宗 18년(1692)에 田主人 高瓊이 자필로 金某에게 토지를 賣渡하면서 작성해 주었던 문서이다. 加樂里南邊의 粟種 7되지기 밭을 步兵木 1필 및 粟·太를 합하여 1섬을 받고 방매한다는 것이다.

(27) 康熙參拾壹年□□ □□□□ 奉事 姜集處明文(50.5cm×54.5cm)

右明文事段 矣年老 連此大無之年 家計辦蕩 非免之寒餒仍于 勢不得已 家坐以北邊

17) 價布는 샅이나 값으로 치러 주는 배를 의미하는 경우와 일정한 身役을 치러야 할 사람이 出役하지 못할 때, 그 代價로 바치는 배를 의미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여기서는 前者이다.

朝鮮後期 濟州西北地域 田畚文記의 研究

麻子參升付只 及黃皮木二根并以 四標段 東射場及李枝演田 西南賣者家及田 北□鐵順田 四標(爲)等如分明正爲在田庫 價本段 細木貳疋 依數准計捧上爲遣 右人處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良中 子孫族類中 若有相爭 則持此文記內乙良用 告官下正事

田主 宣畧將軍 行訓練院判官 李緝(手決)

證人 金終海(手決)

證人 趙時安(手決)

筆執

肅宗 18년(1692)에 田主人 宣畧將軍 行訓練院 判官 李緝이 奉事인 姜集에게 토지를 賣渡하면서 작성해 준 문서이다. 내 나이가 늙고 연이은 흉년으로 家計를 탕진하고 추위와 굶주림을 면하지 못하여 할 수 없이 家坐 北邊의 麻子 3되부치기와 黃皮木 2그루를 합하여 細木 2필을 받고 방매한다는 내용이다.

(28) 康熙參拾肆年乙亥 十一月十九日 高信孟處明文(35cm×36cm)

右明文事段 要用所致以 矣戶婢芘生已常[已買]田 烟臺員 皮車貳拾伍斗付只田庫乙 同人處放賣爲遣 價則正木□疋捧上後 永永許給□□ 四標段 東(공란) 分明爲在田庫 乙 放賣爲去乎 子孫中 相爭者有去等 持此文記以 告官辨正爲乎事

田主 姜斗煥(手決)

肅宗 21년(1695) 11월 19일에 田主人 姜斗煥이 高信孟에게 토지를 賣渡하면서 작성해 준 문서이다. 要用所致로 나의 戶婢 芘生이 이미 산 烟臺員의 皮車 25말부치기 받을 正木 얼마를 그 값으로 받은 뒤 영원히 팔아버린다는 내용이다.

(29) 康熙三十七年戊寅 捌月初柒日 梁畬□處明文(45.5cm×37cm)

右明文事段 □歲凶荒 生理極難乙仍于 外無子□□□ □寸傳得爲在 明月□□員 租種參斗付只內 西邊 □□□付只畚庫 四標段 東賣者畚 西水 南奴有男畚 北買者□ 四標(爲等)如分明正爲在畚庫 價本段 丁丑年分 長子至善亦 雜穀貳石 既已捧價爲有 置 今年段 如此凶荒 生理條以 雌牛禾九壹首 及實穀貳石 步木壹疋等物 准計捧上爲 遣 同人處 永永放賣爲去乎 後次 同生遠近族類中 若有雜談爲去等 持此文記內白良用 告官辨正事

畚主 梁渡(手 決)

證人 奴 春立(左手寸)

筆執 金泰山(手 決)

肅宗 24년(1698) 8월 초 7일에 畚主인 梁渡가 梁齊□에게 논을 賣渡하면서 작성해 준 문서이다. 연이은 흉년으로 살아 나가기가 극히 어려운 탓으로, 明月□□員의 租種 3말부치기 내에 西邊 □□□ 부치기 값으로 丁丑年에 長子 至善이 雜穀 2섬을 이미 받았고, 금년도 이와 같이 흉년이 들어 살아 나갈 수가 없으므로 雌牛 9살배기 1마리 및 實穀 2섬, 步木 1필을 그 값으로 받고 팔아버린다는 내용이다.

(30) 康熙肆拾肆年乙酉 拾貳月貳拾壹日 高太衣處明文(46cm×40cm)

右明文事段 祖上奴婢未分給之際 無子息同姓寡叔母梁氏 衿給奴婢乙 官庭相訟 平均分給之時 秩木出處無路乙仍于 勢不得已 祖上祭條田 長田里以南邊 加時水員 皮車 伍斗付只田 四標段 東高世益田 西南高佻同田 北高尙嶼田 四標爲等如分明爲在田價本段 秩木肆拾尺貳匹 准計爲遺 同田庫<乙>良 太衣處 永永放賣爲去乎 後次 同生子息族中 爭之弊有等 持此文記內乙用<良> 告官辨呈[正]事

田主 梁致殷(手決)

訂人 文尙申(手決)

筆執 金善義(手決)

肅宗 31년(1705) 12월 21일에 田主인 梁致殷이 高太衣에게 토지를 賣渡하면서 작성해 준 문서이다. 祖上의 奴婢를 미처 分給하지 못하였을 즈음에, 子息이 없는 同姓 寡叔母 梁氏가 衿給한 奴婢를 官庭에 서로 訟事하여 골고루 分給할 때 秩木을 마련할 길이 없는 탓으로, 祖上의 祭條田인 長田里 南邊 加時水員의 皮車 5말부치기를 秩木 2필 40척 값으로 계산하여 받고 영원히 팔아버린다는 내용이다.

(31) 康熙四十九年庚寅 正月<□□日 □□□處明文>(43.5cm×36cm)

右明文事段 要用所致以 祖上流伊 居外家坐外田 麻子九升付只 矣祖母生時 衿記爲乎矣 三同生處 各其三升付只式 分衿爲有等以 矣名下三升段 叔母夫處放賣爲乎 田庫四標段 東夫男田 西安厚元田 南姜白昌田 北黃厚元田 四標分明爲遺 價本段 正

木一疋 准計捧上後 永永放賣爲去乎 日後 相爭雜談之弊是去等 持次[此]文記內用乙
告官下正事

白筆執 族下 梁士文(手決)

肅宗 36년(1710) 정월에 田主人 族下 梁士文이 자필로 아무개에게 토지를 賣渡하
면서 작성해 주었던 문서이다. 要用所致로 조상이 여러 번에 조금씩 나누어서 준 居
外(거주지 바깥)의 家坐外田 麻子 9되부치기를, 祖母 生時에 몫을 기록하여 세 同生
에게 각기 3되부치기씩 몫을 나누어 주었으므로, 내 이름의 3되부치기를 叔母夫에게
正木 1필을 받고 팔아버린다는 것이다.

(32) 康熙伍拾貳年癸巳 貳月拾貳日 三寸□□□□(40.5cm×35cm)

右明文事段 如此胸荒 資生出處無路乙仍于 資生條以 勢不得已 祖上傳來 累年副食
是在 里內員 麻子壹斗玖升付只田庫 四標段 東□□□之連家 西北小路 南第婢天化
家坐地壹邊 四標分明正爲在田庫 價本段 肥孕壯雌牛壹首 及正木壹疋等物 准計捧上
爲遣 同人亦中 永永放賣爲乎矣 本文記段 他田并付 不得傳授是在果 日後良中 同生
子孫遠近族類中 相爭是去等 持此文記內<乙>良用 告官下正事

田主 婢 夫眞(右手寸)

筆執 韓重(手決)

肅宗 39년(1713) 2월 12일에 田主人 婢 夫眞이 삼촌 아무개에게 토지를 賣渡하면
서 작성해 준 토지 매도문서이다. 흉년을 당하여 살아 나갈 길이 없는 탓으로, 살기
위해 할 수 없이 祖上 때부터 전해 오며 갈아먹던 里內員의 麻子[삼씨] 1말 9되부치
기를, 肥孕壯雌牛 1마리와 正木 1필을 받고 팔아버리되, 本文記는 다른 밭이 함께 기
재되어 있어 넘겨 주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33) 康熙五十二年癸巳 十一月初參日 朴<振後處明文>(46cm×42.5cm)

右明文事段 要用所致以 □□□□□□□□爲在 里以東邊 古達員 皮牟□□□□
□□ 四標段 東金萬興田 西姜連□<田> 南□時濟田 北姜文望田 四標分明爲在田庫
價本段 肥老退牛禾十五牛隻 及黃狗一口等物 准計捧上後 同振後處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良中 子孫族類中 爭望是去等 此文記內乙用良 告官辨正事

耽羅文化 19號

田主 梁禹臣(手決)
證人 權萬迪(手決)
筆執 旅帥 宋世武(手決)

肅宗 39년(1713) 11월 초 3일에 田主인 梁禹臣이 朴振後에게 토지를 賣渡하면서 작성해 준 문서이다. 要用所致로 상속 받은 마을 동쪽의 古達員에 있는 皮牟 □□갈이 밭을 15살배기 腮老退牛와 黃狗 1마리를 받고 팔아버리는 내용이다.

(34) <康熙>五十二年癸巳 十一月二十四日 姜渭道處明文(36cm×42.5cm)

右明文事段 祖上傳來是在 加樂里內 □□□□斗付只田庫 四標段 東姜汝□(田) <南>□代田 西高處完家及田 北姜汝敏田 四標分明爲在 價本農牛壹首 及正木□□ 准計捧上爲遺 右人亦中 永永放賣爲去乎 若後有雜談 則持此文下正事

白筆 田主 姜汝敦(手決)

肅宗 39년(1713) 11월 24일에 田主인 姜汝敦이 자필로 姜渭道에게 토지를 賣渡하면서 작성해 준 문서이다. 祖上 대대로 내려오는 加樂里 내에 있는 밭을 農牛 1마리와 正木 얼마를 받고 팔아버리는 내용이다.

(35) 康熙伍拾參年甲午 參月初陸日 高世重處明文(43cm×30cm)

右明文事段 如此荒年 資生無路乙仍于 勢不得已 妻祖上傳來佃食爲如乎 者久木員粟伍升付只田庫 四標段 東金右談田 西李永華田 南小路 北姜連允田 及道叱水員 妻四寸大父前別得田 皮牟伍斗付只田庫 四標段 東金德興田 西李時興田 南梁仁弼田 北朴文厚田 四標爲等如分明爲在田庫 貳庫并價本段 雌牛壹首 准計捧上爲遺 同世重處 本文記段 (并以 放賣爲乎矣) 他田庫并付乙仍于 不得許給爲去乎 日後良中 若有爭望者是去等 此文記內乙用良 告官下正事

田主 高繼順(手決)

筆執 高信興(手決)

肅宗 40년(1714) 3월 초 6일에 田主인 高繼順이 高世重에게 토지를 賣渡하면서 작성해 준 문서이다. 흉년이 들어 살아 나갈 길이 없는 탓으로 妻家로부터 물려 받은

者久木員의 粟 5되부치기 및 妻四寸 大父 앞에 별도로 받은 道叱水員의 皮牟 5말부치기 등 2곳을 雌牛 1마리를 받고 팔아버리되, 本文記는 다른 밭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 넘겨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36) <康熙>伍拾參年甲午 三月二十九日 高汝立處明文(30cm×33.5cm)

右明文事段 如此凶月 資生出處無路仍于 不可不 妻衿得 長田里以西北邊員 皮麥壹斗伍升付只 四標段 東姜連允田 西文尙食田 南賣者田 北梁世贊田 四標分明爲在田庫乙 價本禾三雄牛壹首 准計捧上爲遣 同人汝立處 永永放賣爲去乎 日後 了孫中 相爭人有去<等> 技[持]文內乙用<良> 告官辨正事

田主 白筆執 秦佑察(手決)

肅宗 40년(1714) 3월 29일에 田主인 秦佑察이 자필로 高汝立에게 토지를 賣渡하면서 작성해 준 문서이다. 흉년이 들어 살아 나갈 길이 없는 탓으로, 妻家에서 妻 몫으로 받은 長田里 西北邊員의 皮麥 1말 5되부치기를 3살배기 雄牛 1마리를 받고 팔아버리는 내용이다.

(37) <康熙伍拾玖>年庚子 肆月初參日 姜渭老處明文(44.5cm×45.5cm)

<右明>文事段 要用所致以 姜尙齊處相換田 長田里內員 皮牟玖斗付只田 四標段 東梁道先及文後益女論香等田 西小路 南梁清田 北梁信贊田 四標分明田庫乙 末女婿金德昌處 成婚日別給爲有出乎 不幸早死叱分不喻 同<了>息行志不義 故但有一女是乎矣 同田庫乙 同女處 不給之意 丁寧可知是乎等以 矣身生前 同人處放賣後 所捧之物 並只全給次 價本段 率今生黑腹白雌牛禾五 及捌升布伍拾壹尺 玖升陸[木]肆拾尺等物乙 准計捧上 同田庫同人亦中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良中 若有矣女息相爭之弊 則以此文記以 告官下正事

田主 司僕 留鄉別監 高尙嶠(手決)

筆執 儒生 金德熙(手決)

肅宗 46년(1720) 4월 초 3일에 田主인 司僕 留鄉別監 高尙嶠이 姜渭老에게 토지를 매도하면서 작성해 준 문서이다. 요용소치로 高尙齊에게 相換한 長田里內員의 皮牟 9말부치기를 5살배기 雌牛 및 捌升布 51척, 玖升木 40척을 받고 팔아버린다는 내용이다.

(38) 康熙伍拾玖年庚子 十一月初四日 文順逸處明文(44cm×33cm)

右明文事段 矣身名下新舊還上 嚴捧之時 勢難備納乙仍于 母邊衿給田 里內員 麻子 貳升付只田庫 標東任世萬田 南梁士文田 西及北買者田 標分明爲在田庫 價本段 皮穀 壹石 准計捧上後 同順一處 永爲放賣爲去乎 日後 同生子孫中 爭望者是去乙等 持此文 記內乙用良 告官下正事

田主 金福安(左手寸)
證人 奴 元 云(左手寸)
證保 高次允
筆執 任世萬(手 決)

肅宗 46년(1720) 11월 초 4일에 田主人 金福安이 文順逸에게 토지를 賣渡하면서 작성해 준 문서이다. 자신의 이름으로 있는 新·舊還上을 徵捧할 때에 高루 갖추어 납부하기 어려운 형세인 탓으로, 外家에서 어머니 몫으로 받은 里內員의 麻子 2되부 치기를 皮穀¹⁸ 1석을 받고 팔아버린다는 내용이다.

(39) <□□□□□年□□ □>月貳拾玖日 姜渭道前明文(36cm×32cm)

右明文事段 素以至貧 多食還上 辦納無路乙仍于 父前傳得 德石員 貳庫合 粟貳升付 標東小路 西賣者田 南賣<者>田 北大磊林藪 標分明田庫 價本段 粟各拾貳斗 准計捧 上爲還 永永放賣爲去乎 本文記 他田并付 不得許與 後有族類中 雜談之弊是去等 持 此文下正事

田主 李才允(手決)
訂人 金厚白
筆執 朴時茂(手決)

방매년월일이 탈락되었으나 田主人 李才允이 姜渭道에게 토지를 매도하면서 작성 해 준 문서이다. 본래 가난하여 官으로부터 꾸어 먹은 많은 還上을 납부할 길이 없

18) 皮穀은 겹질을 벗겨 내지 아니한 걸곡식으로, 『朝鮮王朝實錄』 宣祖 29년 6월 己酉條 에는 「今者 砲穀手受戶曹料 而實穀不足 訓練都監安集廳皆一家事也 自今推移食米五 斗之人 皮穀十五斗定數可矣」라 하였으며, 『磻溪隱錄』 1. 田制上 分田定稅節目에는 「今國俗 以十五斗爲斛 稱平石 官府用之 又以二十斗爲大斛 稱全石 民間例以皮穀二十 斗爲一石」이라 한 기록이 보인다.

어 아버님에게 물려 받은 德石員의 2곳을 粟 각각 12말씩을 계산해 받고 팔아버리되, 본문기는 다른 밭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 넘겨 주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40) 康熙陸拾年辛丑 四月初三日 幼學姜渭老處明文(32.5cm×43cm)

右明文事段 祖上流來田畵食爲如乎 農牛出處無路乙仍于 長田里以北邊 眞木員 皮牟 伍斗付只田庫 四標段 東李永業田 西梁振賢田·朴順厚田 南小路 北美連允·秦遇禮 等田 四標分明爲在田庫 價本段 黃腹白禾伍壹首雄牛乙 准計捧上爲遣 同人處 永永 放賣爲去乎 本文記段 他田地并付故 不忍許給 後此[次]子孫中 雜談是去等 持此文 記內乙用良 告官下正事

田主 高汝立(左手寸)

證人 金振賢(手 決)

筆執 高處伯(手 決)

景宗 원년(1721) 4월 초 3일에 田主인 高汝立이 幼學 姜渭老에게 토지를 賣渡하면서 작성해 준 문서이다.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오며 갈아 먹었는데, 農牛를 마련할 방법이 없는 탓으로, 長田里 北邊 眞木員의 皮牟 5말부치가 값으로 5살배기 黃腹白의 雄牛 1마리를 계산해 받고 팔아버리되, 本文記는 다른 밭이 함께 기재되어 있으므로 참아 넘겨 주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41) 康熙陸拾壹年壬寅 七月貳拾捌日 姜渭老處明文(37cm×34cm)

右明文事段 素是貧寒之人 年今七十老人 資生無路乙仍于 勢不得已 矣身末了世重 高繼順處買得田 楮古木員 粟種陸升付只 四標段 東金振賢田 西李永業田 南小路 北 洪汝敏田 四標分明爲在田庫 及頓水員 同人處買得田 皮牟伍斗付只 四標段 東金德 興田 西李時興田 南梁仁必田 北林文秀田 四標分明爲在田庫乙 買了己亥年分身死 故墓基代 長子世完處許給爲有矣 方在東西乞食之中 不可不 黃俊貳足白雌中 禾貳牛 隻壹首乙 准計捧上爲遣 同人處 永永放賣爲去乎 本文記并以 永爲許與而日後 子孫 中 爭望者是去等 持此文記內乙用良 告官下正事

田主 高智興(手決)

訂人 文厚益

筆執 高處伯(手決)

景宗 2년(1722) 7월 28일에 田主人 高智興이 姜渭老에게 토지를 賣渡하면서 작성해 준 문서이다. 본래 가난한 사람인 데 지금 70세 노인이 되어 살아 나갈 수가 없는 탓으로, 末子 世重이 高繼順에게 買得한 楮古木員의 粟種 6되부치기 및 同人에게 買得한 頓水員의 皮牟 5말부치기를 買자가 己亥年에 사망하였으므로 墓基[묘터] 대신으로 長子 世完에게 넘겨 주었으며, 지금 東西로 乞食하는 중이라 할 수 없이 암소 2살배기 1마리를 받고 本文記와 함께 팔아버리는 내용이다.

(42) 雍正參年乙巳 貳月初伍日 姜文載處明文(43.5cm × 34.5cm)

右明文事段 素貧之人 當此凶歉 家道四空 生理無路乙仍于 勢不得已 長田里北邊員 妻梁氏初謁日別得田 皮牟捌斗付只田 四標段 東買者田 西姜渭老田 南李英業田 北買者田 四標爲等如分明正爲在田庫 價本段 折定肆正價 正木壹正 七升木綿昌衣壹 粟貳石 皮牟壹石等物 準計捧上爲遺 本文記段 他田并付乙仍于 不得許給爲在果 同姜文載處 永永放賣爲去乎 日後 同生子孫等 爭望者是去等 持此文記內用良 告官下 正事

田主	姜連崙(手決)
訂人	金得守(手決)
訂人	姜貴英(手決)
筆執	異姓□寸 □望一(手決)

英祖 원년(1725) 2월 초 5일에 田主人 姜連崙이 姜文載에게 토지를 賣渡하면서 작성해 준 문서이다. 본래 가난한 사람으로 흉년을 당하며 집안에서 행하여야 할 도리가 무너지고 살아 나갈 길이 없는 탓으로, 長田里 北邊員의 妻 梁氏 初謁日에 別得한 皮牟 8말부치기 받음 正木 1필과 七升木綿으로 만든 昌衣¹⁹⁾ 1벌, 粟 2섬, 皮牟 1섬 등을 받고 팔아버리되, 本文記는 다른 말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 넘겨주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43) 雍正三年乙巳 八月二十七日 姜渭老處明文(44.5cm × 39.5cm)

19) 昌衣는 “襖衣의 잘못이며, 벼슬아치들이 평상시에 입는 옷옷을 말한다. 모양은 소매가 넓고 뒷슬기가 갈라졌다. 『瀋陽狀啓』 癸未 9월 15일조에 「柔遠士兵等處 前日所徵物件中 未畢納爲在 新黑貂皮 上紅段下各色段衣一件 無表上黃貂皮下貂皮衣一件 (中略) 木綿襖衣八件 (下略)」이란 내용이 보인다.

朝鮮後期 濟州西北地域 田畝文記의 研究

右明文事段 別有用處之事 父主前別得爲在田 里以西邊 亭代基員 粟貳斗付只田 四標段 東梁致成田 西買者田 南高致云田 北奴白立及金時進等田 四標分明爲在田庫 價本段 留[驪]雄馬禾四壹匹乙 正木肆疋價以 准計捧上是遣 同田庫 同人亦中 永永放賣爲去乎 本文段 他田地并付乙仍于 不忍許給是在果 或同生子孫中 爭望者是去等 持此文記 告官下正事

白筆執 姜仲望(手決)

英祖 원년(1725) 8월 27일에 田主人 姜仲望이 자필로 姜渭老에게 토지를 賣渡하면서 작성해 준 문서이다. 특별히 사용할 곳이 있어서 아버님으로부터 別得한 마을 서쪽 亭代基員의 粟 2말부치기를 驪雄馬 4살배기 1필을 받고 팔아버리되, 本文記는 다른 말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 넘겨주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44) 雍正三年乙巳 拾月貳拾玖日 梁導善處明文(38cm × 40.5cm)

右明文事段 要用所致以 先代掃墳條 長田東北邊 能先員 乾畚貳夜味合 租種貳斗付只畚庫 四標段 東高萬玉田 南金時興田 西姜連允田 北梁繼殷田及高世益畚 四標爲等如分明爲在畚庫 價本段 正木肆疋乙 准計捧上爲遣 同梁道善處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良中 若有雜談之弊 則持此文記內乙用良 告官下正事

畚主 高宗碩(手決)

證人 梁遇孟(手決)

證保 高汝立(左手寸)

筆執 儒生 梁致成(手決)

英祖 원년(1725) 10월 29일에 畚主人 高宗碩이 姜渭老에게 토지를 賣渡하면서 작성해 준 문서이다. 要用所致로 長田東北邊 能先員에 있는 先代의 掃墳條인 乾畚 貳夜味[필지]를 합한 租種 2말부치기를 正木 4필을 받고 팔아버리는 내용이다.

(45) 雍正肆年丙午 正月晦日 姜渭老處明文(46cm × 35cm)

右明文事段 矣身本是貧窮之人以 值此累凶 生涯無路乙仍于 勢不得已 衿得是在田 長田里內員 皮牟陸斗付只內 壹作西邊 皮牟肆斗伍升付只 四標段 東矣家坐田 南買者田 西小路 北中大路 四標(爲)等如分明田 價本段 九升綿主[紬]四十四尺 九升木

三十七疋 正木壹疋等物乙 准捧是遺 同田庫乙 同渭老處 永永放賣爲乎矣 本文記段 他田地并付是乎等以 不得許與爲在果 日後良中 子孫及同生中 若有爭望者是去等 持此文記 告官下正事

田主 梁信贊(手決)
訂人 文厚益(手決)
筆執 金德□(手決)

英祖 2년(1726) 정월 그믐날에 田主人 梁信贊이 姜渭老에게 토지를 賣渡하면서 작성해 준 문서이다. 본시 가난한 사람으로 연이은 흉년을 당하여 살아 나갈 길이 없는 탓으로, 내 몫으로 받은 長田里 內員 皮牟 6말부치기 중 西邊의 皮牟 4말 5되부치기를 九升綿紬 44척, 九升木 37척, 正木 1필 등을 받고 팔아버리되, 본문기는 다른 밭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 넘겨주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46) 雍正肆年丙午 參月初四日 外族婿姜渭老處明文(41.5cm×52cm)

右明文事段 矣身無依青年寡母以 □兒時 同生兄家 累年居生是如可 不幸矣兒身沒而當此凶荒 生道無路之中 矣末娣家 □□留之計 則亦是貧窮乙仍于 資生條以 勢不得已 矣父主前衿得田 里內員 皮牟壹斗付只田 四標段 東朴順厚田 西及北矣兄家坐田 南□□田及梁氏家 四標分明正爲在田庫 價本段 黑白腹雄牛禾肆壹首 及綿布壹疋等物乙 准計捧上爲遺 渭老處 永永放賣爲乎矣 本文記段 他田并付 故不得許給爲去乎 日後良中 吾矣同生族屬中 雜談之弊是去等 持此文記內乙用良 告官下正事

田主 妻叔母 金召吏(右手寸)
訂 娣 金泰韻(手 決)
訂 長族下 金始進(手 決)
筆執 高處伯(手 決)

英祖 2년(1726) 3월 초 4일에 田主人 妻叔母 金召吏가 外族婿인 姜渭老에게 토지를 賣渡하면서 작성해 준 문서이다. 의지할 데 없는 青年寡母로 幼兒 때에 언니 집에 여러 해 얹혀 살다가 불행히도 언니가 죽고 흉년을 당하여 살아 나갈 길이 없는 가운데, 막내 오라비 집에 머무르려 계획했으나 역시 가난한 탓으로 살기 위해 할 수 없이 아버님 앞에 衿得한 里內員의 皮牟 1말부치기 밭을 雄牛 4살배기 1마리 및

綿布 1필을 받고 팔아버리되, 본문기는 다른 말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 넘겨주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47) 雍正伍年丁未 貳月貳拾日 姜渭老處<明文>(53cm×44.5cm)

右明文事段 家夫生時 年將九(탈락) 生涯無路乙仍于 前年金(탈락) 二十斗等物 貸食而未及報給(탈락) 重今方立門督促急於星火是乎矣 女矣(탈락) 報給極難是白乎等以 勢不得已 家夫祖上流來(탈락)爲如乎 生時女高召吏處 衿給是在田 長田里以□□牛屹田員 皮牟壹石落只 四標段 東婢乙眞田 西朴順厚田 南筆執人田 北小路 四標(爲)等如分明田 價本段 細隱雄牛禾六壹首 准計捧上是遺 同田庫 同渭老處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良中 子孫族類中 或有爭望者是去等 持此文記告官下正事

田主 李召吏(右手寸)

訂人 文厚益(左手寸)

筆執 儒生 金德興(手 決)

英祖 3년(1727) 2월 20일에 田主人 李召吏가 姜渭老에게 토지를 賣渡하면서 작성해 준 문서이다. 남편이 살아 있을 때에 나이 90이 되어 살아 나갈 길이 없는 탓으로, 지난 해에 손윗에게 곡식 20말을 빌려 먹고 아직 갚지 못하였는데, 지금 門에 와서 星火 같이 독촉하나 女人인 이 몸이 갚아 주기가 지극히 어려움으로, 할 수 없이 남편의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오며 갈아 먹다가, 남편이 살아 있을 때에 딸 高召吏에게 衿給한 長田里 牛屹田員의 皮牟 1섬지기를 細隱雄牛 6섯살배기 1마리를 받고 팔아버린다는 내용이다.

(48) 雍正柒年己酉 參月貳拾日 姜渭道前明文(28.5cm×37cm)

右明文事段 要用所致以 祖上傳來是在 矣同生弟世好買得田 遠場員 皮牟壹石付只田庫 四標段 東□繼方田 西玄泰建田 南金太花田 北小路 四標分明爲在田 價本段 正木伍疋 准計捧上爲遺 本文記并以 渭道前 永永放賣爲去乎 日後 若有相爭之弊是去等 持此文記以 告官下正事

(白筆執 田主) 任世秀(手決)

英祖 5년(1729) 3월 20일에 田主人 任世秀가 姜渭道에게 토지를 賣渡하면서 작성

해 준 문서이다. 要用所致로 祖上 때부터 전해 내려 온 同生弟 世好가 買得한 遠場
員의 皮牟 1섬부치기를 正木 5필을 받고 본문기와 함께 팔아버리는 내용이다.

(49) 雍正柒年己酉 閏柒月貳拾伍日 姜渭道處明文(50cm×45.5cm)

右明文字段 命運險惡以 無後寡居 他□□□□人 家計窮迫 有難生理之中 家夫□□
□□ 梁玉允父□同協買得□□爲如乎 家□□□者無顧人 □□給爲有在 明月□□
□ 租種壹斗伍升斗付只畝 四標段 東梁重九畝 西買者畝 南李丁申及姜近畝 北梁重
九畝 四標分明爲在田庫 價本段 正木捌疋 准計捧上爲遺 買得本文記以 同人處 永永
許與放賣爲去乎 日後 若有相爭者是去等 持此文記告官下正事

畝主 夫 氏(右手寸)
證人 奴 衣 還(左手寸)
筆執 洪宇載(手 決)

英祖 5년(1729) 7월 25일에 畝主인 夫氏가 姜渭道에게 토지를 賣渡하면서 작성해
준 문서이다. 탈락이 심하나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命運이 險惡하여 後嗣 없이 홀
로 사는데, 家計가 窮迫하여 살아 나갈 수가 없으므로 明月里의 租種 1말 5되부치기
를 正木 8필을 받고 매득한 본문기와 함께 팔아버리는 내용이다.

(50) 雍正玖年辛亥 貳月初八日 姜渭道處明文(32cm×32cm)

右明文字段 窮迫所致以 右人戶屯自斃莊雌牛壹首 得而資食後 他無報給之勢乙仍于
妻邊傳來田 賴伊金岡山員 柒庫薄田 粟種伍升付 四標 東小路 南小林及朴時武田 西
高太石田及小林 北奴勇立田及小林 標分明田庫 皮穀貳斗加捧後 永永放賣爲去乎 後
有雜談 則持此文 告官下正事

田主 奴 海 立(左手寸)
證人 奴 取 安
筆執 任世秀(手 決)

英祖 7년(1731) 2월 초 8일에 田主인 奴 海立이 姜渭老에게 토지를 賣渡하면서 작
성해 준 문서이다. 窮迫한 所致로 姜渭道 戶屯의 自斃한 莊雌牛 1마리를 얻어서 資
食한 뒤, 달리 값이 줄 형편이 못되므로 妻家에서 물려 받은 賴伊金岡山員에 있는 7

곳의 薄田을 粟種 5되부치기 값으로 皮穀 2말을 더 받은 뒤에 영원히 팔아버린다는 내용이다.

(51) 雍正玖年辛亥 玖月初貳日 姜(渭老處明文)(44.5cm×40.5cm)

右明文事段 矣庶妹婢老赤亦 □□□□之致以 官債許多 備納誠難 出處□□□□之餘 祖上田 長田里以南邊 加時水員 皮牟壹斗付只〈四標段〉東梁振贊田 南高就元田 西及北梁澈田 田庫價本〈段〉□□壹疋捧上爲遺 婢老赤官債備納條以 同渭老處 永永放賣爲乎矣 本文段 他田并錄 不得許給爲去乎 日後良中 若有吾矣子孫族屬中 雜談之弊是去等 持此文記(內乙)用良 告官下正事

田主 姜連允(手決)

訂人 梁遇益(手決)

訂保 梁德萬(手決)

筆執 高處伯(手決)

英祖 7년(1731) 9월 초 2일에 田主人 姜連允이 姜渭老에게 토지를 賣渡하면서 작성해 준 문서이다. 庶妹婢 老赤이 官債가 許多하여 납부하기가 참으로 어렵고 마련할 곳도 전무한 나머지 祖上田인 長田里 南邊 加時水員의 皮牟 1말부치기 값으로 무명 1필을 받아서 婢 老赤의 官債를 납부하기 위해 팔아버리되, 본문기는 다른 말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 넘겨주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52) 雍正拾壹年癸丑 貳月貳拾肆日 姜渭老處明文(47.5cm×36.5cm)

右明文事段 貧寒之致以 妹夫秦□□處買得田 長田里□□□ □木山員 皮(牟)壹斗伍升付只田庫 四標段 東姜文載田 西梁振贊田 南買者田 北梁義贊田 四標分明正爲在 田庫 價段 正木壹疋乙 准計捧上爲遺 同渭老處 本文記并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良中 若有族屬子孫中 相爭者是去等 持此文記(內乙)用良 告官下正事

田主 高汝立(左手寸)

筆執 高處伯(手決)

英祖 9년(1733) 2월 24일에 田主人 高汝立이 姜渭老에게 토지를 賣渡하면서 작성해 준 문서이다. 貧寒한 소치로 妹夫 秦某에게 買得한 長田里 □木山員의 皮牟 1말 5

되부치기 값으로 정목 1필을 받고 본문기와 함께 팔아버리는 내용이다.

(53) 雍正拾壹年癸丑 六月拾伍日 梁振贊處明文(43.5cm×36.5cm)

右明文事段 矣身值此凶年 生涯無路乙仍于 祖上田 長田里以東邊 能先員 皮牟貳石
付內 西邊陸斗付段 矣弟信贊名付是遺 其餘壹石玖斗付田庫 四標段 東高世翼田及梁
仁彌田 西弟信贊田 南金振浩田 北中路 田庫四標分明爲在 田庫價本 黑雌牛禾參首
板子壹部 皮牟貳拾斗等物乙 准計捧上爲遺 同振贊處 永永放賣爲乎矣 本文記段 他
田并付 不得許給爲去乎 日後良中 若有吾矣同生子孫中 雜談之弊是去等 持文記內乙
用良 告官下正事

田主 梁世贊(手 決)

訂人 文有碩(左手寸)

筆執 高處伯(手 決)

英祖 9년(1733) 6월 15일에 田主인 梁世贊이 梁振贊에게 토지를 賣渡하면서 작성
해 준 문서이다. 흥년을 당하여 살아 나갈 길이 없는 탓으로 祖上田인 長田里 東邊
能先員의 皮牟 2섬부치기 중, 西邊 6말부치기는 동생인 信贊의 이름으로 올리고, 그
나머지 1섬 9말부치기는 黑雌牛 3살배기 1마리와 板子 1部, 皮牟 20말을 받고 팔아버
리되, 본문기는 다른 말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 넘겨주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54) 雍正拾壹年癸丑 七月二十二日 梁輔明處明文(45.5cm×35.5cm)

右明文事段 矣妹八字險惡 無後之人以 同家居生爲白如呵 上年分身死時 喪需所入物
出處無路乙仍于 同人處 釘[棺]板壹部貸用後 他無報給之物 勢不得已 其矣晝食爲在
長田里以東邊 坪代員 粟種肆升付只 四標段 東小路及高秦武田 南大路 西梁鐵田 北
秦民星田 四標分明爲在田庫 同輔明亦中 永永放賣爲乎矣 本文記段 他田地并付乙仍
于 不得許給爲去乎 日後 若有同生族類中 爭望者是去等 持此文記內乙用 告官下正
事

田主 同生 金泰韻(手決)

訂人 姜進發(手決)

筆執 宋禎後(手決)

英祖 9년(1733) 7월 22일에 田主人 金泰韻이 梁輔明에게 토지를 賣渡하면서 작성해 준 문서이다. 내 누이는 八字가 險惡하고 後嗣가 없는 사람으로 지난 해에 사망하였을 때, 喪需에 들어갈 물건을 마련할 길이 없으므로, 梁輔明에게 棺板 1部를 貸用한 뒤 달리 갚아 줄 물건이 없어서 할 수 없이 그녀가 갈아먹던 長田里 東邊 坪代員의 粟種 4되부치기를 그 값으로 팔아버리되, 본문기는 다른 말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 넘겨주지 못한다는 내용이다(다음 문서 참고).

(55) 雍正拾壹年癸丑 柒月貳拾參日 姜渭老處明文(44cm×36.5cm)

右明文事段 矣身要用所致以 金泰韻其妹喪需所入內 棺板壹部貸捧是在田庫 長田里以東邊 坪代員 粟種肆升付只田庫 四標段 東斜路 西梁哲田 南中路 北秦旻完田 四標分明正爲在田庫 價本段 正木壹正乙 准計捧上爲遺 同渭老處 本文記并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良中 若有吾矣子孫中 雜談之弊是去等 持此文記內乙用良 告官下正事

田主 梁輔明(手決)

訂 金滿淵(手決)

筆執 高處伯(手決)

英祖 9년(1733) 7월 23일에 田主人 梁輔明이 姜渭老에게 토지를 賣渡하면서 작성해 준 문서이다. 要用所致로 金泰韻에게 그의 누이의 喪需에 들어간 물건 중, 棺板 1部를 빌려 주고 받은 長田里 東邊 坪代員의 粟種 4되부치기를 正木 1필을 받고 팔아버리는 내용이다.

(56) 雍正拾貳年甲寅 正月貳拾捌日 姜渭老處明文(33.5cm×37.5cm)

右明文事段 矣身值此凶荒 生涯無路乙仍于 勢不得已 祖上傳來副食爲如乎 長田里以西邊 亭子基員 粟種伍升付只田庫 四標段 東姜渭悅田 西梁氏田 南買者田 北文得壹田 四標分明爲在田庫 價本段 伍升入只鼎子壹坐 及正木□□尺等物乙 准計捧上爲遺 同渭老處 永永放賣爲去乎 本文記段 他田地并付而不得許給爲去乎 日後良中 或有吾矣子孫族屬中 雜談之弊是去等 持此文內乙用良 告官下正事

田主 金時進(手決)

訂人 文有碩(左手寸)

筆執 高處伯(手決)

英祖 10년(1734) 정월 28일에 田主人 金時進이 姜渭老에게 토지를 賣渡하면서 작성해 준 문서이다. 흉년을 당하여 살아 나갈 길이 없으므로, 조상 때부터 전해 오며 갈아먹던 長田里 西邊 亭子基員의 粟種 5되부치기를 5되들이 술 1坐와 正木 몇 척을 받고 팔아버리되, 본문기는 다른 밭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 넘겨주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57) 雍正拾貳年甲寅 貳月貳拾日 姜渭老處明文(32.5cm × 32cm)

右明文事段 要用所致以 當此荒年 □□□資生條以 矣妻□前衿得 畊食爲如乎 水山里以北邊 公泉味員 乾畚租種壹斗付只 東西洪順敏田 南洪元文畚 北姜渭賣畚 四標爲等如分明正爲在畚庫 價本段 黑雌禾伍壹首 折定准計捧上爲遺 同姜渭老亦中 永永放賣爲乎矣 本文記段 他田地并付乙仍于 許給不得爲去乎 日後良中 了孫族類中 爭望者是去等 持此文記內乙用良 告官下正事

畚主 白筆執 梁致安(手決)

英祖 10년(1734) 2월 20일에 畚主人 梁致安이 자필로 姜渭老에게 토지를 賣渡하면서 작성해 준 문서이다. 要用所致로 흉년을 당하여 살기 위해 妻家로부터 물려 받아 갈아먹던 水山里 北邊 公泉味員의 乾畚 租種 1말부치기를 黑雌牛 5살배기 1마리로 값을 환산하여 받고 팔아버리되, 본문기는 다른 밭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 넘겨주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58) 雍正拾參年乙卯 貳月初貳日 姜渭老處明文(36.5cm × 41.5cm)

右明文事段 矣身要用所致以 祖上傳來 畊食爲在畚 水山里以北邊 泥田員 乾畚租種柒升付只畚庫 四標段 東秦旻浩畚 西秦旻完家坐田 南朴恒賣畚 北洪元文畚 四標分明正爲在畚庫 價本段 正木壹疋及雜穀貳石拾斗等物乙 准計捧上爲遺 渭老處 本文記并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良中 如有吾矣同生中 雜談之弊是去等 持此文記內乙用良 告官下正事

畚主 金弼周(喪人不着)

訂 妹夫 姜時磻(手決)

筆執 儒生 高處伯(手決)

朝鮮後期 濟州西北地域 田畝文記의 研究

英祖 11년(1735) 2월 초 2일에 畝主人 金弼周이 姜渭老에게 토지를 賣渡하면서 작성해 준 문서이다. 要用所致로 祖上 때부터 전해 오며 갈아먹던 水山里 北邊 泥田員의 乾畝 租種 7되부치기를 正木 1필과 雜穀 2섬 10말을 받고 본문기와 함께 팔아버리는 내용이다. 畝主는 喪中이므로 着押하지 않고 있다.

(59) 雍正拾參年乙卯 貳月拾貳日 姜渭老處明文(38.5cm×33.5cm)

右明文事段 矣身要用所致以 祖上流來畝食爲在 長田里以南邊 亅古水員 乾畝貳庫合租種參升付只畝庫 四標段 東西及北賣者田 南小路 四標分明正爲在畝庫 價本段 正木壹疋 及皮穀拾斗等物乙 捧價爲遺 渭老處 永永放賣爲乎矣 本文記段 他田并付 不得許給爲去乎 日後良中 如有雜談之弊是去等 持此文記內乙用良 告官下正事

畝主 朴順厚(手決)

訂人 梁德萬(手決)

筆執 高處伯(手決)

英祖 11년(1735) 2월 12일에 畝主人 朴順厚이 姜渭老에게 토지를 賣渡하면서 작성해 준 문서이다. 要用所致로 祖上 대대로 전해 내려오며 갈아먹던 長田里 南邊 亅古水員의 乾畝 2곳을 합한 租種 4되부치기를 正木 1필과 皮穀 10말을 받고 팔아버리되, 본문기는 다른 말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 넘겨주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60) 雍正十三年乙卯 參月拾伍日 姜渭老處明文(42cm×34cm)

右明文事段 矣父主生前 甲午年大慘凶荒 生活無路乙仍于 外三寸高千壽處 雌牛率今生并貳首 及三禾雌馬壹匹等物乙 貸□□□□ 資生之餘 運道不幸 矣父身死 故未准報給之際 異姓四寸高永寬 呈官就訟 下正時落訟 官分付導良 壯馬壹匹乙 報給亦爲有臥乎所 他無出處報給 故母主初謁日別得是在 長田里以西邊 停白代員 車種柒升落只田庫 四標段 東梁致成田 南梁伯寧田 西張萬雄田 北大路 四標爲等如分明爲在田 價本段 粟肆石乙 准計捧上爲遺 同渭老處 永永放賣爲去乎 本文記段 他田并付而許給不得爲在果 日後良中 他同生族類中 雜談之弊是去等 持此文記告官下正事

田主 金時進(手決)

證人 姜時礪(手決)

筆執 老儒 梁致成(手決)

英祖 11년(1735) 3월 15일에 田主人 金時進이 姜渭老에게 토지를 賣渡하면서 작성해 준 문서이다. 아버님 생전인 甲午年의 참혹한 흉년 때에 살아나갈 길이 없으므로, 외삼촌인 高千壽에게 1살배기를 거느린 雌牛 2마리와 3살배기 雌馬 1필을 빌려서 養生한 나머지, 運道가 불행하여 아버님이 사망하였으므로 미처 갚아주지 못하였는데, 異姓四寸인 高永寬이 官에 訴狀을 올려 訟事를 卜正할 때 落訟(敗訴)하고 官의 分부에 따라 壯馬 1필을 갚아 달라고 하였는 바, 달리 갚아줄 수가 없으므로 어머님이 初謁日에 別得한 長田里 西邊 停自代員의 牛種 7되지기를 粟 4섬을 받고 팔아버리되, 본문기는 다른 발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 넘겨주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61) 雍正拾參年乙卯 肆月初陸日 姜渭老處明文(35cm×33.5cm)

右明文事段 矣身貧窮 養生無路之人以 右人處 上年二月春 祖上忌祭臨當 貧寒之致以 不可越日乙仍于 勢不得已 雜穀拾柒斗 木棉貳拾尺 麻布准尺壹疋等物貸用 至於累年 他無報給之物故 矣祖先祭條畝 流水岩里以西北邊 猪水員 (二)庫合畝 租種柒升付只 四標段 東姜錫齊田 西水洞 南姜文載畝 北梁戒普畝 四標分明正爲在以畝庫渭老處 永永報給爲去乎 日後良中 吾矣子孫族屬中 相爭者是去等 持此文記內乙用良告官卜正事

畝主 梁遇孟(手決)

訂 姜時磻(手決)

筆執 高處伯(手決)

英祖 11년(1735) 4월 초 6일에 畝主人 梁遇孟이 姜渭老에게 토지를 賣渡하면서 작성해 준 문서이다. 가난하여 살아 나갈 길이 없는 사람으로 同人에게 지난 해 2월 봄에 祖上의 忌祭가 臨當하여 貧寒한 소치로 날을 넘길 수 없기에 할 수 없이 雜穀 17말, 木棉 20척 및 麻布는 일정한 자[尺]에 따라 1필 등을 貸用한 지 여러 해가 되어도 달리 갚아 줄 물건이 없는 탓에 祖先의 祭條畝인 流水岩里 西北邊 猪水員의 租種 7되부치기를 그 값으로 갚아준다는 내용이다.

(62) 雍正拾參年乙卯 拾壹月初六日 <탈락>(33.5cm×38cm)

右明文事段 生理無門仍于 □□□處 買得田畝食爲如乎 長田里□□ □□代員 皮牛參斗付只田庫 四標段 東北買者田 南梁仁必田 西金汝成田 四標分明爲在田庫 價本

段 正木壹疋准捧爲遣 同人處 永永放賣爲乎矣 本文記段 他田并付仍于 許給不得爲去乎 日後良中 雜談之弊是去等 持此文告官下正事

田主 姜厚玄(手決)

筆執 金重閔(手決)

英祖 11년(1735) 11월 초 6일에 田主人 姜厚玄이 아무개에게 토지를 賣渡하면서 작성했던 문서이다. 살아 나갈 길이 없으므로 某某에게 사서 갈아 먹던 長田里 □□ 代員의 皮牟 3말부치기를 正木 1필을 받고 팔아버리되, 본문기는 다른 밭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 넘겨주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63) 乾隆元年丙辰 正月晦日 姜〈渭老處明文〉(41cm×33.5cm)

右明文事段 要用所致以 水山里北邊 公泉員 租種柒升付只 姜碩老處買得爲有在畝庫肆標段 東秦峯環畝 西秦峯瑗田 南門路 北買者畝 四標分明爲在畝庫乙 同渭老處 永永放賣爲遣 價本段 麻布貳疋 准計捧上爲乎矣 本文記段 他田并付乙仍于 忍不許給爲去乎 後此[次]子孫中 爭望者是去等 持此文記內[乙]用〈良〉 告官下正事

白筆 畝主 朴恒寶(手決)

英祖 12년(1736) 정월 그믐날에 畝主人 朴恒寶가 자필로 姜渭老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해 준 문서이다. 要用所致로 姜碩老에게 買得한 水山里 北邊 公泉員의 租種 7되 부치기를 麻布 2필을 받고 팔아버리되, 본문기는 다른 밭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 넘겨주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64) 乾隆肆年己未 捌月初捌日 〈朴氏亦中明文〉(41cm×37cm)

右明文事段 要用所致以 妻三寸□□□是在 長田里以西邊 亭白基員 粟種壹升付只田 四標段 東姜渭老田 西奴甘先田 南尹希訪田 北中路 四標爲等如分明爲在田庫 價本段 正木參拾尺 准計捧上後 同朴氏亦中 永永放賣爲去乎 日後 如有子孫中 雜談之弊是去等 持此文記 告官下正事

田主 金就礪(手決)

筆執 金壽亮(手決)

英祖 15년(1739) 8월 초 8일에 田主人 金就礪이 朴氏에게 토지를 賣渡하면서 작성해 준 문서이다. 要用所致로 妻三寸에게 매득한 長田里 西邊 亭白基員의 粟種 1되부 치기를 正木 30척을 받고 영원히 팔아버리는 내용이다.

(65) 乾隆陸年辛酉 參月貳拾玖日 姜聖翁(處明文)(31cm×37.5cm)

右明文事段 矣外孫婢次愛率養之際 情意可憐乙仍于 里內員 安厚元處買得田 皮牟參斗付 孫婢次愛 (탈락) 到今年將八十餘歲老人 如是窮春 衣食決難 (탈락) 在 朝夕以將死日之累年 而孫婢次愛嫁娶 (탈락) 願該準之情狀 □無所謂 如此懸後 何有別給之道乎 其勢迫不得已 矣子女等一處招致 相議於同田賣食之論 則子女等言內 次愛之心行 不言可想 而今當老翁形勢 □如此則 何有毫念之理乎 放賣後 一時之保 亦可論議 □ 故同田皮牟參斗付 東玄允方田 西小路 南奴中官 北姜邁載及奴元云田 四標分明爲在田庫 價本段 正木壹疋 及粟貳石等物 准計捧上後 同聖翁亦中 本文記并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子孫中 或有雜談之弊是去等 此文告官下正事

田主 文順逸(左手寸)

證人 長女 順玉(右手寸)

證保 長子 奴 世公(左手寸)

筆執 金致迪(手 決)

英祖 17년(1741) 3월 29일에 田主人 文順逸이 姜聖翁에게 토지를 賣渡하면서 작성해 준 문서이다. 外孫婢인 次愛를 데려다 기를 즈음에 情意가 可憐한 탓으로, 安厚元에게 買得한 里內員의 皮牟 3말부치기를 孫婢 次愛가 <탈락> 지금에 이르러서는 80여 세의 노인이 되었는데, 이와 같은 窮春에 朝夕으로 衣食을 해결하기가 어렵고 장차 죽을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孫婢 次愛가 시집을 가니, 該準의 情狀을 돌아보기가 딱하기 이를 데 없어 이와 같이 장부에 올린 뒤에 어떻게 別給할 방도가 있겠는가. 할 수 없이 子女들을 한 곳에 불러 모아서 그 밭을 팔아먹을 것을 상의하였더니, 子女들의 말 가운데, “次愛의 心行은 말을 아니해도 상상할 수 있으나 지금 老翁의 形勢가 이와 같으니, 어찌 毫念할 도리가 있겠습니까.” 하고, 放賣한 뒤에 일시적인 保全도 또한 論議할 수가 있다고 하므로, 그 皮牟 3말부치기를 正木 1필과 粟 2섬을 받고 본문기와 함께 팔아버린다는 내용이다.

(66) 〈乾隆陸年〉辛酉 拾壹月拾肆日 姜渭老處明文(39cm×37cm)

右明文事段 矣身要用所致以 矣妻 金就礪處買得田 長田里以西邊 亭白基員 粟種壹升付只田庫 四標東買者田 西奴甘先田 南尹希訪田 北中路 四標分明爲在田庫 價本段 正木參拾尺 捧上爲遺 同渭老處 本文記并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良中 如有吾矣子孫中 雜談之弊是去等 持此文記內乙用良 告官下正事

田主 白筆執 高處伯(手決)

英祖 17년(1741) 11월 14일에 田主人 高處伯이 자필로 姜渭老에게 토지를 賣渡하면서 작성해 준 문서이다. 要用所致로 妻가 金就礪에게 買得한 長田里 亭白基員의 粟種 1되부치기를 正木 30척을 받고 본문기와 함께 팔아버리는 내용이다.

(67) 乾隆陸年辛酉 拾壹月拾肆日 姜渭老處明文(43cm×35cm)

右明文事段 女矣身素是貧寒 子子無依之(탈락) 勢不得已 當此荒年 生活爲計 外邊祖上流(來田) 長田里內員 皮牟參升落只田庫 四標段 東及北買者田 南梁信明田 西梁德進田 四標分明爲在田庫 價本段 正木壹疋捧價爲遺 同渭老處 永永放賣爲乎矣 本文記段 他田地并付 不得許給爲去乎 日後良中 如有吾矣同生子孫中 雜談之弊是去等 持此文記內乙(用)良 告官下正事

田主 姜召吏(右手寸)

訂人 梁義贊(手 決)

筆執 高處伯(手 決)

英祖 17년(1741) 11월 14일에 田主人 姜召吏가 姜渭老에게 토지를 賣渡하면서 작성해 준 문서이다. 본래 가난하여 몸을 의탁할 곳이 없기에 할 수 없이 흉년을 당하여 살아 나갈 계책으로 外家의 祖上 때부터 내려 온 長田里內員의 皮牟 3되지기를 정목 1필을 받고 팔아버리되, 본문기는 다른 밭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 넘겨주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68) 乾隆柒年壬戌 正月初捌日 姜渭老處明文(42.5cm×40cm)

右明文事段 遇此荒歲 生涯無路乙仍于 勢不得已 妻父前論理別得是在 水山里以北邊 甫音水員 畚粗[租]肆升付只 四標段 東洪仁文田 西高永發田 南洪仁文畚 北韓□良

畚 四標分明爲在畚庫 價本段 七升麻布壹疋 及正木壹疋等物 准計捧上爲遺 同渭老處 本文記并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良中 子孫族屬中 若有相爭者是去等 持此文記告官辨正事

畚主 張後昌(手決)

證人 高萬玉(手決)

訂保 金汝鐵(手決)

筆執 梁振贊(手決)

英祖 18년(1742) 정월 초 8일에 畚主人 張後昌이 姜渭老에게 토지를 賣渡하면서 작성해 준 문서이다. 흥년을 당하여 살아 나갈 길이 없으므로, 妻父로부터 別得한 水山里 北邊 甫音水員의 畚租 4되부치기를 七升麻布 1필과 正木 1필을 받고 本문기와 함께 팔아버린다는 내용이다.

(69) 乾隆七年壬戌 十二月二十九日 姜氏前明文(46cm×27.5cm)

右明文事段 貧窮所致以 婢圓今處買得 下院員 皮牟貳斗付 標東邊聖佐 西奴世准田 南小路 北趙□□田 標明爲在 價本段 正木壹疋 准計捧上爲遺 本文記并以 永永放賣爲去乎 若後有雜談 持此文下正事

田主 李才允(手決)

訂人 金厚白

筆執 朴時武(手決)

英祖 18년(1742) 12월 29일에 田主人 李才允이 姜氏에게 토지를 賣渡하면서 작성해 준 문서이다. 貧窮한 所致로 婢 圓今에게 買得한 下院員의 皮牟 2말부치기를 正木 1필을 받고 本문기와 함께 팔아버린다는 내용이다.

(70) 乾隆八年癸亥 拾壹月拾肆日 姜渭道處明文(43.5cm×37cm)

右明文事段 貧寒之身 還上辦備無路乙仍于 父前衿得 里以西邊員 皮牟柒斗付 四標段 東張厚成田 西高允田 南閔興望田 北李勇立田 及有花林員 粟壹升付田 四標東買者田 南小路 西北無主林藪 標分明兩庫田良中 價本段 正木貳疋及家猪貳体等物 准計捧上爲遺 父名買得文記并以 右人處 永永放賣爲去乎 若後有子孫族類中 雜談之弊

是去等 持此文記 告官下正事

田主 文世俊(左手寸)
證人 金永乞(手 決)
保 奴 戒方(左手寸)
筆執 吳汝弼(手 決)

英祖 19년(1743) 11월 14일에 田主人 文世俊이 姜渭道에게 토지를 賣渡하면서 작성해 준 문서이다. 貧寒한 몸으로 還上를 마련할 길이 없으므로, 아버님으로부터 물려 받은 마을 안의 皮牟 7말부치기와 有花林員의 粟 1되부치기를 正木 2필 및 집돼지(家猪) 2마리[二休]를 받고 아버님 名義의 買得文記와 함께 팔아버린다는 내용이다.

(71) 乾隆玖年乙丑 拾壹月貳拾捌日 姜聖翁處明文(28cm×33cm)

右明文事段 矣身當此荒年 還上備納 出處無路乙仍于 祖父母門路 皮牟貳升付田庫 四標段 東姜渭龜 西金明澤 南私奴有□□ 北小路 四標分明爲在田庫 價本段 粟□斗 準計捧上後 永永放賣爲去乎 日後 子孫族屬中 雜談是去等 持此文告官下正事

田主 高元昌(左手寸)
證人 趙庭和(手 決)
筆執 梁萬福(手 決)

英祖 21년(1745) 11월 28일에 田主人 高元昌이 姜聖翁에게 토지를 賣渡하면서 작성해 준 문서이다. 흉년을 당하여 還上를 마련할 곳이 없으므로, 祖父母님의 門路(속칭 올래)인 皮牟 2되부치기를 粟 몇 말을 받고 팔아버린다는 내용이다. 乾隆 9년의 干支는 甲子이며 乙丑은 10년이다. 여기서는 간지를 따랐다.

(72) 乾隆玖年乙丑 拾壹月貳拾捌日 梁義贊處明文(31.5cm×37cm)

右明文事段 要用所(致)以 水田員 皮牟捌斗付只田庫 肆標段 東長[張]萬雄田 西金尙白田 南尙白田 北奴乞同田 價本段 板財壹富捧上後 同人處 本文記并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子孫中 雜談是去等 持此文記內乙用(良) 告官下正事

田主 文有石(手決)

筆執 梁雲赫(手決)

英祖 21년(1745) 11월 28일에 田主人 文有石이 梁義贊에게 토지를 賣渡하면서 작성해 준 문서이다. 要用所致로 水田員의 皮牟 8말부치기를 板財 1富를 받고 본문기와 함께 팔아버린다는 내용이다.

(73) <乾隆拾壹>年丙寅 六月初十日 □□□□□□(42cm×39cm)

右明文事段 貧寒之中 值此<荒年> 還上及生涯出處無路仍于 父前衿得是在 加樂里內 家基 麻了貳斗付田 四標段 東小路 西奴世俊田 南文時永田 北高汝云田 四標分明田 庫 價本段 正木肆疋參拾尺 准計捧上爲遺 右人處 永永放賣爲乎矣 本文記段 衿記他 田并付 故不得許與爲去乎 若後有了孫中 雜談是去等 持此文告官下正事

田主 奴 世公(左手寸)

訂人 金 永(手 決)

筆執 朴時武(手 決)

英祖 22년(1746) 6월 초 10일에 田主人 奴 世公이 아무개에게 토지를 매도하면서 작성해 준 문서이다. 가난한 가운데 흉년을 당하여 還上 및 생계를 마련할 곳이 없는 탓으로, 아버님으로부터 물려 받은 加樂里內의 家基인 麻了 2말부치기를 正木 4필 30척을 받고 팔아버리되, 本文記는 衿記²⁰⁾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탓으로 넘겨주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74) 乾隆拾貳年丁卯 肆月初貳日 姜渭老處明文(36.5cm×34cm)

右明文事段 值此荒年 生涯難堪仍于 祖上流來 而矣同生行分衿時 未分是在 長田里 以西邊 大連指員 粟種肆升付只田 四標段 東安德星田 西及南安赤田 北成取仁田 四標分明爲在 田庫價本段 自弊莊馬·木壹疋 論價捧食是遺 同渭老處 永永放爲乎矣 本文段 他田並綠[錄]乙仍于 不得許給爲去乎 日後良<中> 同生子孫中 若有爭望者是 去等 持此文記 告官下正事

田主 金振堅(手決)

證人 姜時礪(手決)

20) 자손이 상속할 재산의 몫을 적은 문서.

筆執 梁德萬(手決)

英祖 23년(1747) 4월 초 2일에 田主인 金振堅이 姜渭老에게 토지를 賣渡하면서 작성해 준 문서이다. 흉년을 당하여 생계가 난감한 탓으로, 祖上 때부터 전해 내려오다가 兄弟姉妹들과 分割 할 때 미처 나누지 못한 長田里 西邊 大連指員의 粟種 4되부치기를 白弊한 건장한 말과 무명 1필로 값을 논하여 받아 먹고 팔아버리되, 본문기는 다른 밭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 넘겨주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75) 乾隆拾參年戊辰 貳月<□□日 姜渭老處明文>(46cm×34cm)

右明文事段 適以無生□□□□ □□之致以 不可不 祖上流來畊食爲如乎 里以東邊 月羅頂員 皮牟壹石付只 四標段 東許計造田 西梁淨深田 南梁時雄田 北尹世興田 四標分明爲在田庫 同渭老處 黑腹白禾八農牛壹首 准計捧上後 永永放賣爲乎矣 本文記段 他田並付乙仍于 不得許給爲去乎 日後良中 若有了孫族屬中 雜談者是去等 持此文記告官下正事

田主 梁貴成(喪中不着)

證人 梁儀贊(手 決)

筆執 梁德萬(手 決)

英祖 24년(1748) 2월에 田主인 梁貴成이 姜渭老에게 토지를 賣渡하면서 작성해 준 문서이다. 가난한 소치로 조상 때부터 전해 내려오며 갈아 먹던 마을 동쪽 月羅頂員의 皮牟 1섬부치기를 8살배기 農牛 1마리를 받고 팔아버리되, 본문기는 다른 밭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 넘겨주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76) 乾隆拾肆年己巳 六月初二日 姜渭老處明文(23cm×35.5cm)

右明文事段 遇此歲荒 生利爲難乙仍于 不得白弊騎馬壹匹 爲先貸食爲有如乎 他無報給之物 故年前良中 文有石處 買得畊食爲如乎 長田里以東邊 水田員 皮牟捌斗付只 田 四標段 東張萬雄田 西及南金尙伯田 北奴丕同田 四標分明正爲在田庫 本文記并以 永永成文報給爲去乎 日後 若有雜談者是去等 持此文記下正事

田主 梁義贊(手決)

訂人 姜胤傑(手決)

筆執 梁禹英(手決)

英祖 25년(1749) 6월 초 2일에 田主人 梁義贊이 姜渭老에게 토지를 賣渡하면서 작성해 준 문서이다. 흉년을 당하여 생계가 어려운 탓으로, 白弊한 騎馬 1필을 우선 빌려 먹었는데 달리 갚아줄 물건이 없으므로, 연전에 文有石에게 買得하여 갈아먹던 長田里 東邊 水田員의 皮牟 8말부치기로 본문기와 함께 文記를 작성하여 갚아준다는 내용이다.

(77) 乾隆拾肆年己巳 十二月十八日 姜渭老處明文(48.5cm×36cm)

右明文事段 要用所致以 女矣身母主前衿得爲有在 長田里內員 麻了柒升付田庫 則矣長甥其女造家次 相換執持是遣 女矣同生弟處 相換佃食是在 同買南邊代給仍于 既已佃食爲如乎 勢不得已 放賣而次[此]田庫種數 則亦麻了柒升付 四標段 東買者間[門]路 西梁貴成田 南買者家坐田 北梁衣贊家坐田 四標分明爲在田庫 價段 柒禾雖牛壹<首> 准計捧上是遣 同人處 永永放賣爲乎矣 本文記段 都許中 他田財並錄[錄] 故不得許給爲去乎 日後 吾矣族屬中 爭望者是良置 持此文下正事

田主 梁召吏(右手寸)

證人 梁衣贊(手決)

筆執 同生甥 梁德萬(手決)

英祖 25년(1749) 12월 18일에 田主人 梁召吏가 姜渭老에게 토지를 賣渡하면서 작성해 준 문서이다. 要用所致로 어머니 앞에 묶으로 받은 長田里內員의 麻了 7되부치기를 큰 오라버니가 집을 짓기 위해 相換하여 갖고 同生弟와 相換하여 갈아먹던 같은 지경의 南邊 麻了 일곱 되부치기를 대신 지급함으로 이미 갈아먹고 있다가 7살배기 雌牛 1마리를 받고 팔아버리되, 본문기는 都許文記 내용에 다른 밭과 함께 기재되어 있어 넘겨주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78) □□□□□□ 貳月拾柒日 <姜渭老處明文>(44cm×40cm)

右明文事段 □□寡女 子子貧産之致 當此荒歲 嫡子與庶子均役米 不勝備納□□□□勢不得已 家夫生時 高宗碩處買得是在 長田里以東北邊 能先員 乾番租種庫合 貳斗付番庫 四標段 東金德熙田 西賣者田 南高日咸田 北高日咸番 四標分明爲在番 價本

段 折定參疋半 捌禾孕雌牛壹首 及正木壹疋半等物乙 准計捧上爲遣 同渭老處 本文
并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良中 若爭望者是去等 持此文告官下正事

畚主 梁召吏(右手寸)
訂 子 梁貴仁(手 決)
筆執 高處伯(手 決)

연대는 탈락되었으나 2월 17일에 畚主인 梁召吏가 姜渭老에게 작성해 준 토지 매
도증서이다. □□寡女로 子子가 貧産한 소치로 흉년을 당하여 嫡子와 庶子の 均役米
"를 마련해 납부할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家夫 生時에 高宗頤에게 買得한 長田里
東北邊 能先員의 乾畚 租種 2말부치기를 3필 반 값으로 환산하여 8살배기 孕雌牛 1
마리 및 正木 1필 반을 받고 本文記와 함께 팔아버린다는 내용이다.

(79) 乾隆拾伍年庚午 拾壹月貳拾柒日 姜德翁處明文(35cm×34.5cm)

右明文事段 松落員 粟種捌升付只田庫乙 梁仁赫處買得畊食爲如乎 同田庫 右人祖上
田是如 顯爲還退乙仍于 價本 禾束驪騎雌馬壹匹 及木貳疋 准計捧上爲遣 同田肆標
段 東姜渭老田 西無主同田 南同田 一邊金錫寶田 北官田 肆標分明田庫乙 買得本文
記并以 永永放賣爲去乎 若後有雜談之弊 則持此文告官下正事

21) 『耽羅誌草本』 濟州牧 倉庫條 平役庫의 注에 “무오년(숙종 4년, 1678)에 御史 李度遠
이 各班의 不立番者에게 米 10斗를 받아서 이를 각 苦役들에게 悭料를 나누어 주거
나 여러 가지로 官에서 屯이나 物품 따위를 지급하는 데에 사용하고, 均役廳이라
이름하였다. 그 뒤 임오년(영조 38년, 1762)에 목사 申光翼이 2두를 감하고 狀啓를
올려서 奏請하여 법식으로 정하고 平役이라 개칭하였다. 當 年 무술년(헌종 1년, 1838
년)에는 (목사) 李源達이 또 8升을 감하여 7斗 2升을 여름과 가을로 나누어 받았
다.”고 하였다. 또 『濟州邑誌』 濟州牧 均稅條에는 「均役廳 卽戊午御史李度遠設立 營
除番 前將官·假率·旗牌官·兼司僕·鄉吏·忠翊衛·武學·定虜衛·甲士·鐵撫·旗
手·書記·漢生·倭生·書員·醫生 二千八百四十一人 夏秋并各捧米十斗式 免役書員
五人 夏秋并每名五斗式 合米一千八百九十四石內 有喪物故除 隨所捧米 牧子·鮑作·
船格·席匠及各所上下 牧除番 前將官·假率·旗牌官·鄉吏·書員·訓導·旗手·州
司·書員 六百五十四名 每名各夏秋并捧五斗 免役書員三名 夏秋并每名五斗式 合米五
百七十一石內 有喪物故除 隨所捧官廳 補官廳·工禮房所·行禮房所 私賑廳·首工房
所·支應所·山馬監牧所·漁漢各所上下」라 하여, 방영의 번 드는 일을 면제 받은 전
장관 등 방영총람에는 各班의 번드는 일을 면제 받은 숫자가 3,590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耽羅文化 19號

田主 金尙白(手決)

證人 奴 升完(手決)

筆執 金致迪(手決)

英祖 26년(1750) 11월 27일에 田主인 金尙白이 姜德翁에게 토지를 賣渡하면서 작성해 준 문서이다. 松落員의 粟種 8되부치기를 梁仁赫에게 買得하여 갈아 먹었는데, 그 밭을 姜德翁이 祖上田이라 하여 도로 물려 주기를 원하므로, 7살배기 驕騎雌馬 1필과 무명 2필을 받고 매득한 본문기와 함께 팔아버린다는 내용이다.

(80) 乾隆拾捌年癸酉 參月拾陸日 金尙白處明文(27.5cm×31cm)

右明文事段 切有用處之事 故妻邊和會尙得是在 松落員 粟種捌升付只田庫 四標段 東美消老田 西無主洞山 南金錫寶田 北官田 四標爲等如分明正爲在田庫 價本 正木 伍疋 准計捧後 同人處 永永放賣爲乎矣 本文記段 他田并付乙仍于 不得許給爲去乎 日後 若或有子孫中 雜言者是良置 持此文記 告官下正爲乎乙事

田主 白筆執 梁仁赫(手決)

英祖 29년(1753) 3월 16일에 田主인 梁仁赫이 자필로 金尙白에게 토지를 賣渡하면서 작성해 준 문서이다. 간절히 사용할 곳이 있어서 妻家에서 和會할 때 妻 몫으로 물려 받은 松落員의 粟種 8되부치기를 正木 5필을 받고 팔아버리되, 본문기는 다른 밭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 넘겨주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81) 乾隆拾玖年甲戌 參月初參日 奴今先處明文(42.5cm×36.5cm)

右明文事段 矣身大賦不幸 當祖父主葬地 不吉之致以 改葬于他所之境 棺子及盖板乙 並只 右人白備 白手造作 貸用爲有知乎 矣門中 皆是貧窮之勢 報價無路 故勢不得已 祖母主葬山外田 流水岩里以北邊 花松員 皮牟肆斗付只田庫 四標東李九星田 西高日 咸田 南金秋澤及姜公望田 北梁德萬及姜彥望田 四標分明正爲在田庫 木絲貳拾尺等物乙 <准計捧上爲遣> 同右人今先處 永永成文報給爲去乎 日後良中 若有吾矣族屬中 雜談之弊是去等 持此文記內乙用良 告官下正事

報田主 金時永(手決)

同姓 五寸姪 金汝碩

朝鮮後期 濟州西北地域 田畵文記의 研究

金昌碩

門長 金振浩(手決)

筆執 高處伯(手決)

英祖 30년(1754) 3월 초 3일에 田主人 金時永이 奴 今先에게 토지를 賣渡하면서 작성해 준 문서이다. 타고난 운명이 不幸하고 當祖父의 葬地가 不吉하여 다른 곳에 改葬할 형편이므로, 棺子 및 盖板을 합해서 右人(奴 今先)이 준비하여 만든 것을 貸用하였는데, 門中이 모두 貧窮한 형세여서 값을 갚아줄 길이 없으므로 祖母님의 葬山 外田인 流水岩里 北邊 花松員의 皮牟 4말부치기를 木綿 20척을 받고 文記를 작성하여 갚아준다는 내용이다.

(82) 乾隆二十二年丁丑 十二月初十日 姜應期處明文(31.5cm × 34.5cm)

右明文段 當此荒年 生利爲難乙仍于 祖上傳來是在 開亦只旨員 粟種伍斗付田庫 四標段 東姜渭龜田 西小路 南姜碩贊田 北姜碩姬田 標分明田庫 價本段 正木壹疋參拾尺 准計捧上爲遺 同人處 永永放賣爲乎矣 本文記段 他田并付乙仍于 不得許與爲去乎 日後 □□□□是去等 持此文記以 告官下正事

田主 洪碩九(手決)

訂人 玄允貴

筆執 任繼星(手決)

英祖 33년(1757) 12월 초 10일에 田主人 洪碩九가 姜應期에게 토지를 賣渡하면서 작성해 준 문서이다. 흉년을 당하여 생계가 어려운 탓으로, 조상 때부터 전해 내려오던 開亦只旨員의 粟種 5말부치기를 正木 1필 30척을 받고 팔아버리되, 본문기는 다른 발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 넘겨주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83) 乾隆貳拾伍年庚辰 十二月□□□ 俞復遠處明文(31cm × 36.5cm)

右明文事段 要用所致以 勢不得已 祖上流來是在 東好旨員 粟種肆升付只田庫 四標段 東及北小路 南姜德璜田 西高世萬田 四標分明爲在田庫 價本段 正木參疋 准計捧上爲遺 同人處 永永放賣爲乎矣 本文記 他田并付乙仍于 不得許給爲去乎 日後良中了孫中 若有雜談爭望之弊是去等 持此文記告官下正事

田主 安世位(手決)

筆執 許 繼(手決)

英祖 36년(1760) 12월에 田主인 安世位가 俞復遠에게 토지를 賣渡하면서 작성해 준 문서이다. 요용소치로 조상 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東好旨員의 粟種 4되부치기를 正木 3필을 받고 팔아버리되, 본문기는 다른 말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 넘겨주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84) 乾隆貳拾陸年辛巳 貳月拾伍日 俞復遠處明文(31.5cm×31.5cm)

右明文事段 要用所致以 祖上流來矜得田 念水旨員 粟種壹斗伍升付只田 肆標段 東秦<공란>田 西張得星田 南梁戒雄田 北朴戒星田 肆標分明爲在田庫 價本段 正木肆疋准計捧上爲乎矣 回俞復遠處 永永放賣爲去乎 本文記段 他田并付乙仍乎 不得許給爲去乎 日後 子孫族屬中 相爭者是去等 持此文記以 告官下正事

田主 成取仁(手決)

筆執 宋元英(手決)

英祖 37년(1761) 2월 15일에 田主인 成取仁이 俞復遠에게 토지를 賣渡하면서 작성해 준 문서이다. 요용소치로 조상 때부터 전해 내려오던 矜得田인 念水旨員의 粟種 1말 5되부치기를 正木 4필을 받고 팔아버리되, 본문기는 다른 말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 넘겨주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85) 乾隆貳拾玖年甲申 正月拾玖日 許次成處明文(34.5cm×32.5cm)

右明文事段 當此荒年 所食還上 備納勢難仍于 姜位老處相喚[換]田 能先員 皮牟壹石伍斗田內 矣家坐外田 皮牟壹石付只分叱 四標 東高日萬 西金明宅及小路 南朴厚番田 北買者家 四標分明爲在田庫 價本正<木>肆疋 准捧後 皮牟壹石付只分叱 同次成處 永永放賣爲去乎 日後 同生族類中 爭望者是去等 持此文記告官下正事

田主 梁召史(左手寸)

證人 高日萬(手 決)

筆執 文直泰(手 決)

英祖 40년(1764) 정월 19일에 田主人 梁召史가 許次成에게 토지를 賣渡하면서 작성해 준 문서이다. 흉년을 당하여 官으로부터 꾸어 먹은 還上를 납부하기가 어려운 형세인 탓에, 姜位老와 相換한 能先員의 皮车 1섬 5말부치기 중, 나의 家坐外田인 皮车 1섬부치기만을 正木 4필을 받고 팔아버린다는 내용이다.

(86) 乾隆貳拾玖年甲申 拾壹月貳拾陸日 梁元發處明文(31cm×35cm)

右明文<事>段 當此凶年 生涯及還上備納 出處<無>路乙仍于 矣身 勢不得已 梁振贊處買田 石萬以員 粟參升付只田庫 四標段 東姜德黃田 西小路 南宋友賢田 北姜德黃田 肆標分明是如田庫 價本段 正木壹疋准計捧爲遺 同人梁元發處 本文記并 永永放賣爲去乎 日後 若有良中 子孫族類中 雜談相爭者是去等 持此文記內<乙>用<良> 告官下正事

田主 金德完(手決)

筆執 梁起文(手決)

英祖 40년(1764) 11월 26일에 田主人 姜德完이 梁元發에게 토지를 賣渡하면서 작성해 준 문서이다. 흉년을 당하여 생계와 還上를 마련할 곳이 없는 탓으로, 梁振贊에게 買得한 石萬以員의 粟 4되부치기를 正木 1필을 받고 본문기와 함께 팔아버린다는 내용이다.

(87) 乾隆參拾年乙酉 正月貳拾伍日 姜大翁處明文(26cm×42.5cm)

右明文事段 值此荒年 連遭喪敗之中 父山價出處無路乙仍于 父生前 姜厚立處買得田 到隱員 皮车參斗付只田 四標段 東姜氏田 西及南金奉澤田 北金益澤田 四標分明爲 在田庫 價本段 正木壹疋 準計捧上是遺 同田庫乙 同人處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良中 若有吾矣同生子孫中 雜談者是去等 本文記及持此文記以 告官下正事

田主 白筆執 金衡鎰(父喪中不着)

英祖 41년(1765) 정월 25일에 田主人 金衡鎰이 자필로 姜大翁에게 토지를 賣渡하면서 작성해 준 문서이다. 흉년을 당한 데다가 연이은 喪敗를 만난 가운데, 아버님의 山所 값을 마련할 길이 없어서 아버님 생전에 姜厚立에게 買得한 到隱員의 皮车 3말부치기를 正木 1필을 받고 영원히 팔아버린다는 내용이다.

(88) 乾隆參拾年乙酉 柒月初陸日 姜大翁處明文(30.5cm × 38.5cm)

右明文事段 要用所致以 矣父主掃墳條載錄[錄]爲有在 建南木員 皮牟[]斗付只
田庫 四標段 東姜碩老田 西小路 南買者田 北張得完田 四標分明是在田庫 價本段
捌禾農雄牛壹首 及柒禾雄牛一首等物乙 准計捧上爲遣 同大翁處 永永放賣爲乎矣 本
文記段 他田財并錄乙仍于 不得許給爲去乎 日後良中 若有矣身子孫族屬中 雜談之弊
是去等 持此文記 告官下正事

田主 梁元道(手決)

訂人 姜成會

筆執 田主異姓五寸姪子 梁起文(手決)

英祖 41년(1765) 7월 초 6일에 田主人 梁元道가 姜大翁에게 토지를 賣渡하면서 작
성해 준 문서이다. 要用所致로 아버님의 掃墳條로 載錄한 建南木員의 皮牟 몇 말부
치기를 8살배기 農雄牛 1마리 및 7살배기 雄牛 1마리 등을 받고 팔아버리되, 본문기
는 다른 밭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 넘겨주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89) 乾隆參拾年乙酉 捌月初拾日 許次成處明文(38.5cm × 39cm)

右明文事段 女矣身不幸 早年喪夫 生理未由之中 勢不得已 姜渭老處相換是在 長田
里以東邊 能先員 皮牟壹石伍斗付只內 東邊壹石付只段 右人等處 既已買[賣]食是遣
西邊皮牟伍斗付 四標 東買者田 西中路 南買者田 北橫路 四標分明正爲在田庫 價本
段 正木參疋半等物乙 准計捧上爲遣 同許次成處 舊本文貳張并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良中 如有女吾矣子孫族類中 爭望者是去等 持此文記內乙用良 告官下正事

田主 梁召史(右手寸)

訂人 金道應(手 決)

訂人 奴 貴 金(左手寸)

筆執 高處伯(手 決)

英祖 41년(1765) 8월 초 10일에 田主人 梁召史가 許次成에게 토지를 賣渡하면서
작성해 준 문서이다. 女人인 이 몸이 불행하여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살아 나갈 계
책이 없어서 姜渭老와 相換한 長田里 東邊 能先員의 皮牟 1섬 5말부치기 중에 東邊
의 1섬 부치기는 許次成 등에게 이미 팔아 먹었고, 西邊의 皮牟 5말부치기는 이번에

正木 3필 반을 받고 본문기와 함께 팔아버린다는 내용이다.

(90) □□□□□□ □□□□□□ 〈許次成處明文〉(cm × cm)

右明文事段 (달락)田 長田里以東邊 地境田員 皮車拾貳斗付田庫 四標段 東金成貴田 西奴日萬田 南梁元發田 北小路 四標分明正爲在田庫 價本段 黑白腹雄牛禾四壹首 及木十伍尺等物乙 准計捧上爲遺 同許次成處 永永放賣爲乎矣 本文記段 都許中并付 不得許與爲去乎 日後良中 如有吾矣子孫中 爭望者是去等 持此文記內以 告官下正事

田主 姜厚敏(手決)

筆執 高處伯(手決)

방매연월일이 달락되었으나 위 명문은 田主人 姜厚敏이 許次成에게 작성해 준 토지 매도증서이다. 長田里 東邊 地境田員의 皮車 12말부치기를 雄牛 4살배기 1마리와 무명 15척을 받고 팔아버리되, 本文記는 都許文記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탓으로 넘겨주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91) 乾隆參拾肆年己丑 拾壹月三十日 姜永完處明文(41cm × 34cm)

右明文事段 矣當此荒年 資生爲難乙仍于 勢不得已 外邊祖上田庫以 朴弼永處相換是在田庫 在於牛路里東北邊 宗木洞員 皮車拾三斗付只 四標段 東梁水泰田 西小路 南朴丁弼田 北姜德墳田 四標分明爲在田庫 價本段 正木參疋 准計捧上爲遺 同姜永完亦中相換 本文記并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良中 若有子孫中 雜談之弊是去等 持此文記以 告官下正事

田主 張永漢(手決)

證人 妻甥 朴重太(手決)

筆執 張得完(手決)

英祖 45년(1769) 11월 30일에 田主人 張永漢이 姜永完에게 토지를 賣渡하면서 작성해 준 문서이다. 흉년을 당하여 살아 나가기 어려운 탓으로 外家の 祖上田으로 朴弼永과 相換한 牛路里 東北邊 宗木洞員의 皮車 13말부치기를 정목 3필을 받고 본문기와 함께 팔아버린다는 내용이다.

(92) 乾隆參拾伍年庚寅 捌月初七日 三寸叔父主大翁處明文(45cm×35cm)

右明文事段 當此荒年 許多還上所食 無生涯路乙仍于 勢不得 父主於別得田庫 別月山員 祖父主掃祭條田一北邊 皮牟參石付田庫 四標段 東金斗文田 西大路 南邊掃祭條 北梁聖禹田 肆標分明爲在田庫 價本段 東內田員 粟玖(斗付)只田 價本貳正 正木拾柒(正) 竝爲也 拾玖正等兩乙 准計棒上爲遣 同等三寸大翁處 永永放爲去乎 本記段 掃祭條田文記并付 不得許給爲去乎 日後良中 如有吾矣子孫中 雜談之弊是去等 持此文記 告官下正事

田主 姜 應 周(手決)

訂人 孫 尙 權(手決)

筆執 同姓四寸(手決)

英祖 46년(1770) 8월 초 7일에 田主人 姜應周가 三寸叔父主 大翁에게 토지를 賣渡하면서 작성해 준 문서이다. 흉년을 당하여 許多한 還上를 꾸어 먹고 살아 나갈 길이 없으므로 아버님에게 別得한 別月山員에 있는 祖父님 掃祭條 北邊의 皮牟 3섬부 치기를, 東內田員의 粟 9말부치기 값의 2필과 正木 17필을 합해서 19필을 받고 팔아 버리되, 본문기는 다른 말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 넘겨주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93) 乾隆參拾捌年癸巳 拾壹月貳拾日 異姓四寸 金韻□前明文(32cm×34cm)

右明文事段 要用所致 正木貳正貸用後 價本段 舅便衿得田 頓浦卞屹田員 粟種柒升付只 四標段 東南北夫萬發田 西金龜迪田 標分明田庫 永永放賣爲乎矣 本文記段 他田并付 不得許給爲去乎 日後 子孫族類中 若有雜談之弊是去等 持此明文 告官下正事

田主 姜 氏(右手掌)

筆執 □□祥(手 決)

英祖 49년(1773) 11월 20일에 田主人 姜氏가 異姓四寸 오라비 金韻□에게 토지를 賣渡하면서 작성해 준 문서이다. 要用所致로 正木 2필을 꾸어서 쓴 뒤, 그 값으로 甥宅의 衿得田인 頓浦卞屹田員의 粟種 7되부치기를 팔아 버리되, 본문기는 다른 말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 넘겨주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94) 乾隆參□□□□□ □□月二十日 高召吏處明文(40cm×30cm)

右明文事段 □□要用所致以 買得田 長田里西邊 丁泉員 粟種肆升付只 四標段 東小路 西梁大才 南姜辰昌 北高召吏 四標分明爲遺 價本段 正木貳疋 準計捧上爲遺 同高召吏處 永永放賣爲去乎 日後 子孫族類中 雜談之弊是去等 持此文記以 告官下事

田主 朴聖由(手決)

筆執 高漢翊(手決)

英祖 40년대에 작성된 이 明文은 田主人 朴聖由가 高召吏에게 토지를 賣渡하면서 작성해 준 문서이다. 要用소치로 買得田인 長田里西邊 丁泉員의 粟種 4되부치기를 정목 2필을 받고 팔아버린다는 내용이다.

(95) 乾隆肆拾年乙未 拾壹月貳拾玖日 姜應新處明文(40cm×40.5cm)

右明文事段 要用所致以 勢不得已 矣父衿得田庫 城田員 皮牽壹石付只田庫 肆標段 東邊姜翊昌田 西金亨鎰田 南買者田 北高已萬田 四標分明爲遺 田庫價本段 正木參疋拾尺 準計捧上是遺 田庫本文記段 他田并付乙仍于 同人姜應新處 永永放賣爲去乎 若或有子孫族類中 雜談之弊是去等 旨[持]此文記以 告官下正事

田主 金亨斤(手決)

訂人 姜興文(手決)

筆執 高漢翊(手決)

英祖 51년(1775) 11월 29일에 田主人 金亨斤이 姜應新에게 토지를 賣渡하면서 작성해 준 문서이다. 要用所致로 아버님으로부터 물려 받은 城田員의 皮牽 1섬부치기를 正木 3필 10척을 받고 팔아버리되, 본문기는 다른 밭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 넘겨주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96) 乾隆肆拾壹年丙申 八月拾六日 姜應新處明文(30cm×48.5cm)

右明文事段 矣身要用所致以 矣身衿得田 眞木員 粟種肆升付田庫 四標段 東買者田 南及西小路 北李厚發 四標本[分]明爲是在田庫 價本段 正木陸疋 準計捧上爲是在 同人應新處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良中 子孫族類中 雜談之弊是去等 持此文記以 告官下正事

田主 自筆執 高漢翊(手決)

英祖 52년(1776) 8월 16일에 田主인 高漢翊이 자필로 姜應新에게 토지를 賣渡하면서 작성해 준 문서이다. 要用所致로 자신의 몫으로 받은 眞木員의 粟種 4되부치기를 정목 6필을 받고 팔아버린다는 내용이다.

(97) 乾隆四拾壹年丙申 拾二月初拾日 高莫先處明文(36.5cm×29cm)

右明文事段 矣身父別給田 所臥木員 皮車拾斗付只田庫 四標段 東及北梁守泰田 南姜碩上田 西姜永貴田 四標分明正爲在田庫 價本段 正木壹疋 準計捧上爲乎矣 他田并付乙仍于 本文記并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 子孫中雜談之弊 則持此文記以 告官下正事

田主 高召吏(右手寸)

筆執 高漢翊(手 決)

英祖 52년(1776) 12월 초 10일에 田主인 高召吏가 高莫先에게 토지를 賣渡하면서 작성해 준 문서이다. 아버님이 別給한 所臥木員의 皮車 10말부치기를 正木 1필을 받고 本문기와 함께 팔아버린다는 내용이다.

(98) 乾隆肆拾參年 拾月參拾日 姜應新處明文(40.5cm×34.5cm)

右明文事段 要用所致 長岡山員 粟種壹斗付只 四標段 東小路 西洪氏 南梁元發 北梁世峇田庫 四標分明爲在 價本段 正木參疋 準計捧上爲遺 本文記段 他田并付仍于 同人處 永永放賣爲去乎 日後 子孫中 雜談者是去等 持此文記告官下政事

田主 自筆執 梁起峇(手決)

正祖 2년(1778) 10월 30일에 田主인 梁起峇이 자필로 姜應新에게 토지를 賣渡하면서 작성해 준 문서이다. 요용소치로 長岡山員의 粟種 1말부치기를 正木 3필을 받고 팔아버리되, 本문기는 다른 밭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 넘겨주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99) 乾隆伍拾年乙巳 拾貳月初捌日 姜應新處明文(40.5cm×41cm)

<右明文>事段 要用所致以 矣母買得於朴聖由爲在 長田里西邊 公泉員 粟種肆升付只

朝鮮後期 濟州西北地域 田畝文記의 研究

田庫 四標段 東小路 西梁大梓田 南姜辰昌田 北高召史田 四標分明爲在田庫 價本段 正木參正 准計捧上爲遺 同應新處 本文記并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良中 子孫族類 中 爭望之弊是去等 持此文記以 告官下正事

田主 代女 玄召史(右手寸)

筆執 張得成(手 決)

正祖 9년(1785) 12월 초 8일에 田主를 대신하여 딸(代女)인 玄召史가 姜應新에게 토지를 賣渡하면서 작성해 준 문서이다. 요용소치로 어머님이 朴聖由에게 買得한 長田里 西邊 公泉員의 粟種 4되부치기를 正木 3필을 받고 본문기와 함께 팔아버린다는 내용이다.

(100) 乾隆伍拾貳年丁未 至月拾玖日 □□□□□□(36cm×29cm)

右明文事段 矣身要用所致以 水山里場內 公泉員 粟伍升付只田庫 肆標段 東小路 西梁大梓田 南文大德田 北買者田 四標分明是在田庫 價本段 正木貳正 准計捧上爲遺 同人處 永永放賣爲去乎 本文記段 他田并付仍于 不得許與而日後 子孫族類中 雜談之弊是去等 持此文記告官下呈[正]事

田主 姜進昌(手決)

筆執 姜興復(手決)

正祖 11년(1787) 至月 19일에 田主인 姜進昌이 아무개에게 토지를 賣渡하면서 작성해 주었던 문서이다. 요용소치로 水山里場內인 公泉員의 粟 5되부치기를 正木 2필을 받고 팔아버리되, 본문기는 다른 말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 넘겨주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101) 乾隆伍拾陸年辛亥 正月貳拾陸日 姜應新處明文(37.5cm×36cm)

右明文事段 矣身年老 衣服無路乙仍于 買得自起 長田里以東邊 地京田員 皮牟貳庫合 拾參斗付只田庫 四標段 東孫處柵及洪彥弼田 西姜歌永田 南孫尙柵田 北中路 四標分明爲在田庫 價本段 正木貳正半 准計捧上爲遺 同人處 本文記并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 子孫族類中 爭望之弊是去等 持此文記以 告官下正事

田主 許次成(左手寸)

訂人 高漢龍(手 決)

筆執 高漢翊(手 決)

正祖 15년(1791) 정월 26일에 田主人 許次成이 姜應新에게 토지를 賣渡하면서 작성해 준 문서이다. 年老하여 衣服을 마련할 길이 없는 탓으로, 자신이 買得한 長田里 東邊 地京田員의 2곳을 합한 皮牟 13말부치기를 정목 2필 반을 받고 본문기와 함께 팔아버린다는 내용이다.

(102) 乾隆伍拾柒年壬子 貳月初四日 姜東起處明文(35cm×35cm)

右明文事段 要所用致以 勢不得而 祖母別給田 宗南洞員 皮牟伍斗付只田庫 四標段 東小路 西梁大才田 南趙中念田 北無主田 四標分明爲在田庫 價本段 正木三疋二十四尺 准計捧上爲在 本文記并 姜東起處 永永放賣爲去乎 日後 子孫族類中 雜談之弊是去等 持此文記告官下呈[正]事

田主 朴士成(手決)

筆執 許 雄(手決)

正祖 16년(1792) 2월 초 4일에 田主人 朴士成이 姜東起에게 토지를 賣渡하면서 작성해 준 문서이다. 요용소치로 祖母님이 別給한 宗南洞員의 皮牟 5말부치기를 정목 3필 24척을 받고 본문기와 함께 팔아버린다는 내용이다.

(103) 乾隆六拾年壬子 九月初七日 姜大翁處明文(41.5cm×37cm)

右明文事段 矣身當此荒年 穀食馬出處無乙仍于 以勢不得已 矣身買得田 宗南洞員 皮牟參斗付只田庫 同員壹庫田 粟種陸升付田庫 肆標段 東梁守太田 西小路 南權貞必田 北買者田 肆標分明爲遺 壹庫田皮牟參斗付田庫 肆標段 東小路 西梁大才田 南梁禹道田 北無主田 肆標分明爲去乎 貳庫合價本段 壯雄馬壹匹 准計捧上後 同大翁處 本文記二丈[張]并以 永永放賣爲去乎 子孫族類中 雜談之弊是去等 持此文記以告官下正事

田主 姜永完(手決)

訂人 朴次方

筆執 姜興仁(手決)

正祖 16년(1792) 9월 초 7일에 田主人 姜永完이 姜大翁에게 토지를 賣渡하면서 작성해 준 문서이다. 흉년을 당하여 穀食과 말[馬]을 마련할 곳이 없는 탓으로 내가 買得한 宗南洞員의 皮車 3말부치기와 같은 지경의 粟種 6되부치기 2곳을 건장한 雄馬 1필을 받고 본문기 2장과 함께 팔아버린다는 내용이다. 乾隆 60년의 干支는 乙卯이며 壬子는 乾隆 57년이다. 여기서는 간지를 따랐다.

(104) 乾隆伍拾柒年壬子 拾壹月初九日 姜應新處明文(41.5cm×42.5cm)

右明文事段 矣身當此殺年 生餓無路乙仍于 勢不得已 矣父衿得田 長田里內員 所謂宅代田員 皮車拾斗付只內 西邊家基 皮車貳斗付只 價本段 正木武正是遺 東邊回田 皮車八斗付只 價本段 正木肆正 而四標段 東梁興才田 西申恒寶田 南梁仲呂田 北高汗□及□□□田 四標分明爲遺 二庫田合價 正木陸正准計捧上後 同人處 永永放賣爲去乎 本文段 衿記中他田并付乙仍于 不得許給 日後 子孫族類中 雜談爭望之弊是去等 持此文記告官下正事

田主 梁召史(右手寸)

訂人 高莫先(左手寸)

筆執 梁禹天(手 決)

正祖 16년(1792) 11월 초일에 田主人 梁召史가 姜應新에게 토지를 賣渡하면서 작성해 준 문서이다. 흉년을 당하여 살아 나갈 길이 없는 탓으로 아버님으로부터 물려 받은 長田里內員의 이른바 宅代田員 皮車 10말부치기 중, 西邊의 家基인 皮車 2말부치기 값은 正木 2필이고, 東邊의 같은 밭인 皮車 8말부치기의 값은 정목 4필로 계산하여 함께 정목 6필을 받고 팔아버리되, 본문기는 다른 밭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 넘겨주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105) 乾隆伍拾柒年壬子 拾貳月拾玖日 姜應新處明文(43.5cm×36cm)

右明文事段 矣身當此黃[荒]年 矣祖供養生涯無路乙仍于 矣祖矣父處衿給 而矣父矣身處衿給是在田庫 在於長田東邊 能先員 皮車壹石拾斗付只 四標段 東姜次永及孫尙柵田 西高昌道田 南高昌道田 北小路 四標分明爲在田庫 價本段 正木陸正 准計捧上爲遺 同人處 本文記并 永永放賣許與爲去乎 日後 子孫族類中 相爭之弊是去等 持此文記內乙用〈良〉 告官下正事

田主 許永發(手 決)

證人 姜次永(左手寸)

筆執 高昌道(手 決)

正祖 16년(1792) 12월 19일에 田主人 許永發이 姜應新에게 토지를 賣渡하면서 작성해 준 문서이다. 흥년을 당하여 조부님을 공양하며 살아 나갈 길이 없는 탓으로 조부님이 아버님에게 물려주고 아버님이 나에게 물려 준 長田里 東邊 能先員의 皮牟 1섬 10말부치기를 정목 6필을 받고 본문기와 함께 팔아버린다는 내용이다.

(106) <乾隆>伍拾捌年癸丑 正月拾壹日 姜應新處明文(43cm×33cm)

右明文事段 女矣身 當此殺年 生涯無<路>乙仍于 矣三寸之夫李厚發處 相換是在田庫段 本里眞木洞山員 粟種貳升付只內 北邊壹升參合付段 女矣身次子 梁應福造家次本洞姜翊昌處 田庫相換是遣 南邊粟種柒合付只田庫 四標段 東買者田 西李厚發田 南買者田 北姜翊昌相換田 四標分明爲在田庫 價本段 正木壹疋 準計捧上後 同人處本文記并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 子孫族類中 相爭雜談之弊是去等 持此文記告官下正事

田主 高召史(右手寸)

筆執 高昌道(手 決)

正祖 17년(1793) 정월 11일에 田主人 高召史가 姜應新에게 토지를 賣渡하면서 작성해 준 문서이다. 흥년을 당하여 살아 나갈 길이 없으므로 三寸의 남편인 李厚發과 相換한 本里 眞木洞山員의 粟種 2되부치기 중, 北邊의 1되 3홉부치기는 이 몸의 次子 梁應福의 집을 짓기 위해 本洞의 姜翊昌과 相換하고, 南邊의 粟種 7홉부치기는 정목 1필을 받고 본문기와 함께 팔아버린다는 내용이다.

(107) 乾隆六十年乙卯 正月貳拾日 姜大翁處明文(42cm×35.5cm)

右明文事段 如此殺年 生道勢難 故青年寡母 年當八十 宗婦生涯次 舅父宅流來是在長田里內員 貳庫合 皮牟壹石付只田庫乙 癸丑參月拾玖日 同人處 正木貳拾伍疋 捧上後 同田庫以 成文記生涯爲遣 甲寅年參月以 同正木就[取]利 并參拾肆疋拾伍尺 報納後 還退束約爲白乎乃 如是連荒 還退新友伊 生道尤難乙仍于 同田庫 不可不放

朝鮮後期 濟州西北地域 田畵文記의 研究

賣是于等以 田庫肆標段 東安處道及梁禹道田 西姜翊昌及姜氏與買者田 南小路及許隆田 北姜翊寶田 肆標分明爲遺 價本段 正木貳拾陸疋 准計捧上後 同大翁處 前文記壹張并以 永永放賣爲乎矣 本文記段 舅宅都許中并付乙仍于 不得許給爲跡 日後 子孫族類中 雜談之弊是去等 持此文記以 告官下正事

田主 姜 氏(右手掌)

訂人 高莫先(左手寸)

筆執 幼學 姜 興(手 決)

正祖 19년(1795) 정월 20일에 田主人 姜氏가 姜大翁에게 토지를 賣渡하면서 작성해 준 문서이다. 흉년을 당하여 살아 나가기 어려운 형세이므로, 靑年寡母로 나이 80이 된 宗婦가 살기 위해 舅父宅에 전해 내려오는 長田里內員의 2곳을 합한 皮車 1섬부치기를, 癸丑年 3월 19일에 同人에게 正木 25필을 받은 뒤 文記를 작성하여 생활하였고, 甲寅年 三月로 同 정목의 利了를 합하여 34필 15척을 값아 준 뒤, 도로 물리기로 약속하였으나 이와 같은 연이은 흉년에 도로 물리기는 커녕 살아 나가기 더욱 어려운 탓으로 그 밭을 하는 수 없이 방매하되, 값은 정목 26필을 계산해 받은 뒤 前文記 1장과 함께 팔아버리되, 본문기는 시택[舅宅]의 都許文記에 함께 기재되어 있어 넘겨주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108) 乾隆陸拾年乙卯 二月二十二日 姜應新處明文(41.5cm×30cm)

右明文事段 當此大殺年 生涯無路故 勢不得已 祖上流來田 長田里西北邊 此南同山員 粟種伍升付只田庫 四標段 東姜氏田及買者田 西小路 南亦買者田橫曲中姜益昌田 北姜錫申田 四標分明爲在田庫 價本段 壯雌牛壹首 准計捧上後 同應新處 永永放賣爲去乎 本文記段 都許中并付故 不得許給爲遺 日後 若有子孫族類中 爭望者是去等 持此文記 告官下正事

田主 李處貴(左手寸)

筆執 姜應龍(手 決)

正祖 19년(1795) 2월 22일에 田主人 李處貴가 姜應新에게 토지를 賣渡하면서 작성해 준 문서이다. 흉년을 당하여 살아 나갈 길이 없으므로 祖上 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長田里 西北邊 此南同山員의 粟種 5되부치기를 건장한 雌牛 1마리를 받고 팔아버

리되, 본문기는 都許文記에 함께 기재되어 있어 넘겨주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109) 乾隆陸拾年乙卯 □□月貳拾伍日 姜應新處明文(41.5cm×37cm)

右明文事段 矣身當此荒年 負債夥多 報給無路乙仍于 矣妻父高仁道處 買得田一庫 皮牟壹石付只 及高太官處 買得田一庫 皮牟壹石拾斗付只 妻衿得是遺 勢不得已 上下二庫 放賣報債而同田庫 都在於臥乎岳員是置 肆標段 東梁守太及買者田 西高漢翊 及金光守田 南姜道齊田 <北>姜<공란>田 肆標分明正是遺 二谷田價本段 正木柒疋 准計捧上爲遺 二庫田 本文記貳張并以 同應新處 永永放賣爲去乎 日後 子孫族類中 爭望雜談之弊是去等 持此文記內<乙>用良 告官下正事

田主 姜永完(手 決)

訂人 朴次方(左手寸)

筆執 姜興仁(手 決)

正祖 19년(1795) 모월 25일에 田主인 姜永完이 姜應新에게 토지를 賣渡하면서 작성해 준 문서이다. 흉년을 당하여 負債가 많은데 갚아 줄 길이 없으므로, 妻父인 高仁道에게 買得한 皮牟 1섬부치기 1곳과 高太官에게 買得한 皮牟 1섬 10말부치기 1곳을 妻 뵈으로 물려 받았는데, 臥乎岳員에 있는 이 上下 2곳을 放賣하여 빚을 갚으려고 정목 7필을 받고 본문기 2장과 함께 팔아버린다는 내용이다.

(110) 嘉慶貳年丁巳 捌月拾陸日 姜遇仁處明文(37cm×22.5cm)

右明文事段 要用所致以 家夫買得田 巾奉員 皮牟肆斗付只田庫 四標 東及南賣者田 姜福仁 西姜大有田 北姜寶明田 四標分明爲遺 田庫價本段 正木貳疋 准計捧上爲在 同姜遇仁處 本文記并 永永放賣爲去乎 日後 子孫中 雜談之弊是去等 持此文記以 告官下正事

田主 梁召吏(右手寸)

筆執 高漢翊(手 決)

正祖 21년(1797) 8월 16일에 田主인 梁召吏가 姜遇仁에게 토지를 매도하는 문서이다. 요용소치로 남편이 買得한 巾奉員의 皮牟 4말부치기를 正木 2필을 받고 本文記와 함께 팔아버린다는 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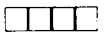
(111) 嘉慶六年辛酉 拾二月二十七日 姜應新處明文(41.5cm×35cm)

右明文事段 要用所致 矣身祖上衿下傳來畵一夜味 在於能先伊 而價本段 正木參正 準計捧上是遺 同畵四標段 東高昌道田 西梁遇道田 南高日萬畵 北梁重呂畵 四標分明 而同人處 永永放賣爲乎矣 本文記段 都許并付仍于 不得許與爲去乎 後孫中 或有爭望者是去等 持此文記告官下正事

畵主 白筆執 高漢清(手決)

純祖 원년(1801) 12월 27일에 畵主人 高漢清이 자필로 姜應新에게 토지를 매도하는 문서이다. 요용소치로 祖上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能先伊이에 있는 논 1배미[夜味]를 正木 3필을 받고 영원히 팔아버리되, 本文記는 都許文記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탓으로 넘겨주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112) 嘉慶玖年甲子 二月二十八日 高召吏處明文(30.5cm×28cm)

右明文事段 田在手外之致以 高成連處買得爲在 加沙只岳員 粟種貳升付 四標段 東  西小路 南徐宗信田 北小路 標分明爲在田庫 價本段 正木壹疋拾尺 準捧後 本文記并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子孫中 若有雜談之弊是去等 持明文告官下正事

田主 白筆執 宋仁庚(手決)

純祖 4년(1804) 2월 28일에 田主人 宋仁庚이 자필로 高召吏에게 작성해 준 토지 매도증서이다. 밭이 手外에 있는 소치로 高成連에게 買得한 加沙只岳員의 粟種 2되 부치기를 正木 1필 10척을 받은 뒤 本文記와 함께 팔아버린다는 내용이다.

(113) 嘉慶拾捌年癸酉 肆月拾參日 金鎰東處明文(37.5cm×33cm)

右明文事段 要用所致以 孫德福處買得田 長田里東邊 地京田員 皮牟陸斗付只田庫 四標段 東高萬夫田 西姜時遇田 南梁佑天田 北姜興允田 四標分明爲遺 田庫價本段 正木肆疋 準計捧上爲遺 同人處 本<文>記并永放賣爲去乎 日後 子孫中 雜談之弊是去等 持此文記以 告官下正事

田主 朴次寶(手決)

筆執 高漢墀(手決)

純祖 13년(1813) 4월 13일에 田主人 朴次寶가 金鎰東에게 작성해 준 토지 매도증서이다. 요용소치로 孫德福에게 買得한 長田里 東邊 地京田員의 皮牟 6말부치기를 正木 4필을 받고 本文記와 함께 팔아버린다는 내용이다.

(114) 道光貳拾貳年壬寅 二月十七日 姜仁永處明文(36cm×28.5cm)

右明文事段 揮田還買之意以 吾矣流來衿得田 在於召吉里以南邊 上石藪田員 粟種肆升付只田庫 四標段 東任暎祿田 南高哥田 西夫光好田 北邊亦任暎祿田 四標分明爲 在 此田庫 價本段 白木貳疋 準計捧上爲旆 同姜仁永處 永永放賣爲乎矣 本文記段 都許中并付仍于 不得許與爲去乎 日後 右人執持畊食是矣 若有吾矣了孫及族屬中 詳審流來文券 而此田載之是如 雜談爭田之弊是去等 持此明文內意以 告于官庭以爲下 呈[正]事

田主 夫宗周(手決)

筆執 姜奉河(手決)

憲宗 8년(1842) 2월 17일에 田主人 夫宗周가 姜仁永에게 작성해 준 토지 매도증서이다. 揮田을 도로 사려는[還買] 뜻으로 나의 祖上 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衿得田인 召吉里 南邊에 있는 上石藪田員의 粟種 4되부치기를 白木 2필을 받고 팔아버리되, 本文記는 都許文記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탓으로 넘겨주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115) 道光貳拾伍年乙巳 四月初十日 長姪宗明(處明文)(cm×cm)

右明文事段 要用所致 流來衿得田 召吉里□□邊 木橋旨員 粟種肆升付只 肆標段 東仲兄田 南長城 西瘠路 北末□□□□田 四標分明爲在田庫 價本段 正木□貳疋 準計捧上後 同人處 永永放賣爲乎矣 本文記段 都許中并付 故不得許與爲去乎 日後 了孫族類中 雜談之弊 則持此文記憑施事

田主 姜仁弘(手決)

筆執 叔 姜云悅(手決)

憲宗 11년(1845) 4월 초10일에 田主人 姜仁弘이 長姪인 宗明에게 작성해 준 토지 매도증서이다. 요용소치로 祖上 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衿得田인 召吉里 木橋旨員의 粟種 4되부치기를 正木 2필을 받고 팔아버리되, 本文記는 都許文記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탓으로 넘겨주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116) 道光貳拾柒年丁未 三月拾參日 姜宗明處明文(42.5cm×35cm)

右明文事段 要用所致 吾矣流來衿得田 里東南邊 水累治同山員 皮牟肆斗付只 肆標段 東姜大龍田 南亦姜大龍田 西賣者田 北李鎮衡田 標分明爲在田庫 價本段 白木肆疋貳拾尺 準計捧上後 同右人處 永永放賣是矣 本文記段 都許併付 故不得許與爲去乎 日後 若有了孫族類中 相爭之弊是去等 持此文記 告官下正事

田主 白筆執 朴汗守(手決)

憲宗 13(1847) 3월 13일에 田主人 朴汗守가 자필로 姜宗明에게 작성해 준 토지 매도증서이다. 요용소치로 祖上 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衿得田인 마을 東南邊 水累治同山員의 皮牟 4말부치기를 白木 4필 20척을 받고 팔아버리되, 本文記는 都許文記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탓으로 넘겨주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117) <道光>參拾年庚戌 四月二十六日 秦至煥處明文

<右明>文事段 要用所致以 吾矣買者田 在於長田里以南邊 古達伊員 皮牟壹斗付只田庫 四標段 東姜宜集田 西宋文奎田 南高奉訓田 北白却 四標分明爲在 此田庫價本段 白木壹疋十尺 準計捧上爲衿 同秦至煥處 永永放賣是矣 本文記段 都許併付 故不得許給爲去乎 日後了孫中 雜談之弊是去等 持此文記以 告官下呈事

田主 白筆執 金在信(手決)

哲宗 원년(1850) 4월 26일에 田主人 金在信이 자필로 秦至煥에게 작성해 준 토지 매도증서이다. 요용소치로 내가 산 長田里 南邊에 있는 古達伊員의 皮牟 1말부치기를 白木 1필 10척을 받고 팔아버리되, 本文記는 都許文記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탓으로 넘겨주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118) 咸豐元年辛亥 三月二十四日 林栢悅處明文(38.5cm×34.5cm)

右明文事段 要用所致 矣祖上流來田 塊野藪員 粟種捌升付只 四標段 東小路 南林藪 西金<공란>田 北梁哥 四標分明而田庫 價本段 正木肆拾伍疋 準計捧上後 同人處 永永放賣是矣 本文記段 都會併付 故不得許與 于後若有雜談之弊 則以文記告官下正事

田主 李行振(手決)

訂人 金宗集(手決)

筆執 張英助(手決)

哲宗 2년(1851) 3월 24일에 田主인 李行振이 林栢悅에게 작성해 준 토지 매도증서이다. 요용소치로 祖上 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塊野藪員의 粟種 8되부치기를 正木 45필을 받고 팔아버리되, 本文記는 都許文記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탓으로 넘겨주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119) 咸豐十年庚申 二月初四日 姜宗明處明文(40cm×32cm)

右明文事段 已吾矣衿給田 里西邊 文掌儒洞山員 粟種參升付只 四標段 東及北高氏田 西姜召史田 南小路 標分明爲在田庫 價本段 白木捌疋 準計捧後 同右人處 永永放賣爲在 本文記段 都會并付 故不得許給爲去乎 日後 了孫中 雜談之弊是去等 持此文記 告官下呈事

田主 梁道明(手決)

筆執 金致菴(手決)

哲宗 11년(1860) 2월 초4일에 田主인 梁道明이 姜宗明에게 작성해 준 토지 매도증서이다. 이미 내가 갖급한 마을 西邊 文掌儒洞山員의 粟種 3되부치기를 白木 8필을 받고 영원히 팔아버리되, 本文記는 都會文記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탓으로 넘겨주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120) 同治四年乙丑 十二月初四日 姜仁永處明文(37cm×37.5cm)

右明文事段 吾矣田土在於境外 難爲作農 則換買於附近之意 白起買得田 塊野藪員 粟種捌升付 四標段 東小路 西名不知任哥田 南藪德 北高哥田 標分明是遺 田庫價本段 正木伍拾柒疋貳拾尺 準捧後 右人處 本文記并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 若有雜談是去等 持此文記下正事

田主 林栢悅(手決)

筆執 林栢助(手決)

高宗 2년(1865) 12월 초 4일에 田主人 林栢悅이 姜仁永에게 작성해 준 토지 매도 증서이다. 나의 밭이 지경 밖에 있으므로 농사짓기가 어려워 거리가 가까운 곳에 있는 밭과 換買[相換]할 뜻으로 자신이 買得한 塊野藪員의 粟種 8되부치기를 正木 57필 20척을 받고 本文記와 함께 팔아버린다는 내용이다.

(121) <同治五>年丙寅 二月初八日 姜仁永處明文(40cm×38cm)

右明文事段 費用所致 吾矣流來衿下田 長田里西邊 臥岳員半割 皮車伍斗付只 肆標段 東高千孫田 南姜有寬田 西及北李宗尙田 肆標分明是遺 田庫價本段 正木拾柒正 準計捧上後 同右人處 永永放賣是矣 本文記段 都許并付故 不得已許及[給]爲去乎 日後若有同生族屬子孫中 雜談改言之弊是去等 持此文記告官下正事

田主 任順洪(手決)

筆執 朴宗吉(手決)

高宗 3년(1866) 2월 초 8일에 田主人 任順洪이 姜仁永에게 작성해 준 토지 매도 증서이다. 費用所致로 祖上 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衿下田인 長田里 西邊 臥岳員의 半을 떼어낸 皮車 5되부치기를 正木 17필을 받고 팔아버리되, 本文記는 都許文記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탓으로 넘겨주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122) 同治七年戊辰 正月二十五日 長姪姜承魯處明文(40.5cm×33cm)

右明文事段 當此荒年 生道未由 故流來衿給田 月羅木田員 皮車伍斗付只 四標段 東高行吉田 西姜仁宗田 南趙敬集田 北父親主田 標分明是遺 田庫價本段 正木拾正 準計捧上後 同承魯處 永永放賣爲去乎 日後 若有子孫族屬中 雜談之弊是去等 持此文記 憑考施行事

田主 長叔 姜明寬(病不着)

筆執 姜履寬(手決)

高宗 5년(1868) 정월 25일에 田主人 長叔 姜明寬이 長姪인 姜承魯에게 토지를 賣渡하는 證書이다. 흉년을 당하여 살아 나갈 계책이 없어 祖上 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衿給田인 月羅木田員의 皮車 5말부치기를 正木 10필을 받고 팔아버린다는 내용이다.

(123) 大韓光武九年 十二月十八日 李峻爽處明文(36.5cm × 30cm)

右明文事段 急有用處 故畚田員 自起買得田 車種陸斗付 四標段 東孫珍珠田 西姜基杓田 南中路 北朴萬永田 右標分明而田庫 價本段 錢文貳佰肆拾伍兩 準計捧上後 同右人處 本文記併 永爲放賣是矣 日後 若有子孫中 雜談之弊 則持此明文 憑考施行事
田主 姜在寬(手決)
筆 從弟 達寬(手決)

光武 9年(1905) 12월 18일에 田主人 姜在寬이 李峻爽에게 작성해 준 토지 매도증서이다. 긴급히 사용할 곳이 있으므로 畚田員에 있는 자신이 買得한 車種 6말부치기를 錢文 245냥을 받은 뒤 本文記와 함께 팔아버린다는 내용이다.

(124) □□□□□□ 柒月初四日 □□□□□□(37.5cm × 45cm)

□□□□遭慘憾 又值凶歉閭門啼飢將木免 窮桑之□□□□□ □水里西邊 廣水員畚 十三夜味 租種三斗付只 東北水洞 西孫□□〈南〉□□□ 四標分明畚庫乙 同人處 車二十斗 農牛一隻捧上後 本□□□□ 永永放賣爲乎矣 矣身寡居 門無男丁 兒子稚幼 不得着名 婿高齊崙代成文爲去乎 日後 如有雜談 此明文內〈乙〉用良 告官下正事
畚主 寡婦吳氏代婿 白筆 高齊崙(手決)
證人 吳海雲(手決)

방매연대가 탈락되었으나 이 명문은 7월 초 4일에 田主人 高齊崙이 寡婦 吳氏를 대신하여 자필로 某人에게 작성해 준 토지 매도증서이다. □水里 西邊에 있는 廣水員畚 13夜味の 租種 3말부치기를 車 20말, 農牛 1마리를 받은 뒤 本文記와 함께 팔아버린다는 내용이다. 다만 내가 사는 집에는 男丁이 없고 兒子가 어려서 着名하지 못하고 대신 사위인 高齊崙이 문기를 작성한다고 하였다.

(125) 〈탈락 姜應期處明文〉(34.5cm × 39cm)

右明文事段 要用所致以 加樂里東邊 □□□□ 父主前衿得 及同生金以蒙果 相換是在 并三庫合 皮車貳石付只田庫 四標段 東玄貴成田 南西小路 北姜翊同田 四標爲等 如分明田庫 價本段 正木拾伍正 準計捧上後 同族婚姜應期處 永永放賣 而相換本文記并以 許與□□□□ 日後良中 子孫族類中 或有雜談是去等 持此文下正事

朝鮮後期 濟州西北地域 田畚文記의 研究

田主 妻三寸妻 金 氏(右乎寸)

筆執 李希慶(手 決)

要用所致로 加樂里 東邊의 아버님에게 衿得한 밭 및 同生 金以蒙과 相換한 세 곳을 합한 皮牟 2섬부치기를 正木 15척을 받은 뒤 相換한 本文記와 함께 팔아버린다는 내용이다.

Ⅲ 賣買文記의 綜合的 檢討

본 논고에 수록된 전달분기의 수는 모두 125건이다. 이들 文記의 내용을 편의상 우선 정리해 보면 <표 1>과 같다.

<표1>

番	收賣年月日	賣渡者	買受者	放賣事由	取得經緯	地境	作物面積	價格表示, 其他
001	선조20(1587) 1/23	奴舍卜	姜繼男	要用所致	祖上流來	向只員 木橋旨員	粟 8升 粟48升	雄牛 1首, 雜穀 2石
002	효종 5(1654) 3/5	奴先元	姜斗煥	要用所致	祖上傳來	登子員	? 5升	粟穀 1石, 雜牛皮 1令
003	- - 6/26	高汝云	姜斗煥	還上備納	相換	禾應九水員	粟 1斗	穀 3石 加樂里
004	- - 2/?	奴德男	달 락	母埋置價	祖上田	里內南邊	皮牟 5斗	
005	- - 11/22	許繼申	金夢	要用所致	父邊祖上	洞來田員	粟種 6升	6升木, 38尺1疋
006	- 10 (1659) 3/2	文召吏	姜斗煥	凶年	母邊祖上	木勒堂員	粟種20升	雄牛 2首, 壯雌牛 2首
007	현종 6(1645)10/?	奴巨男	姜斗煥	要用所致	祖上流來	愁仇井員 怪泉味員	7負 3束 5負	4束正木 22疋
008	- 6(1665)12/25	姜得厚	徐起元	要用所致	妻初滿口	泥田員	租種 7升	木綿 3疋 水山里
009	- 9(1668)11/4	文以博	姜斗煥	要用所致	完黃堂員		皮牟25斗	木綿 10疋 泮月里
010	- 11(1670) 1/28	全泰亨	高南難	要用所致	祖上傳來	加叱□路	皮牟 7斗	4升麻布 60尺 加樂里
011	- 12(1671) 7/16	高太崑	姜斗煥	要用所致	祖上衿得	代田	皮牟 1石	□牛 □首
012	- 13(1672) 6/5	奴太好	姜斗煥	麥種喫破		草田	粟壹 2升	穀9 價
013	- 14(1673) 8/10	奴金山	姜斗煥	同色馬	許給	賴田員	皮牟51斗	雌馬1匹, 細木2疋, 皮牟1石
014	- - 9/2	婢隣生	姜斗煥	同色馬	遺言田	別居幕基 果背其旨員 果小加路員	車 6斗 皮牟 6斗 皮牟 8斗	今生雄馬 納點價
015	- - 9/5	婢隣生	姜 集		同色馬	南橋旨員	粟 3斗	雌馬 1匹
016	숙종 1(1675)10/18	婢隣生	姜斗煥	同色馬		南橋旨員	□□ 2斗	雌馬 1匹
017	- - 11/18	婢隣生	姜 集	凶年	家父衿得	南橋旨員	粟 37升	粟穀 5石, 正木 □疋
018	- - 12/11	姜取璜	-	-	登科別得	別入山員	皮牟 3石	皮穀8石, 雌馬1匹 上加里
019	- 3(1677) 3/7	金武淑	姜斗煥	要用所致	父前買得	高內岳南邊 內邊	皮牟 2石 粟種 1斗	高內岳 雌馬 1匹 高內岳
020	- - 10/4	朴時茂	姜斗煥	要用所致	成婚別得	松樂員	粟 1斗	步兵和疋, 雌馬1令 加樂里
021	- 5(1679) 9/21	婢申化	姜斗煥	兵物成備		南山員	粟 4升	藥丸 12兩

耽羅文化 19號

番	放賣年月日	賣渡者	買受者	放賣事由	取得經緯	地境	作物面積	價格表示, 其他
022	· 6(1680) 8/13	趙繼胤	姜 集	費用所致	買得	和樂員	皮車 4石	步木 15疋
023	· 10(1684) 5/12	金潤玉	·	·	別得	□□員	皮車 3石	加樂里
					買得	別入山員	皮車 3石	戶牌 眞□ 捧上
024	· 11(1685) 9/5	奴金係	·	還上備納	外邊傳來	埋叱洞泉員	粟種 6升	太 1石, 價布 1疋
025	· 16(1690)12/25	高應雲	高泰義	費用所致	祖上傳來	古達里	皮車 9斗	價布 □疋
026	· 18(1692) ?/8	高 瓊	아무개	·	·	□□員	美種 7升	步兵村邑業, 太 1石 加樂里
027	· · ?/?	李 緝	姜 集	連此凶年	·	·	麻子 3升	細木 2疋
028	· 21(1695)11/19	姜斗煥	高信孟	費用所致	·	烟臺員	支車 25斗	正木 □疋
029	· 24(1698) 8/7	梁 渡	梁 □	凶年	·	明月□□員	租種 2斗	雌牛 1首, 費穀 5石, 步木 1疋
030	· 31(1705)12/21	梁致殷	高太衣	秋木備納	祖上祭條	加時水員	支車 5斗	秋木 40尺 2匹, 長田里
031	· 36(1710) 1/?	梁上文	아무개	費用所致	祖上流伊	家坐外田	麻子 3升	正木 1疋
032	· 39(1713) 2/12	韓夫眞	아무개	凶年	祖上傳來	里內員	麻子 19升	雌牛 1首, 正木 1疋
033	· · 11/3	梁庚臣	朴振後	費用所致	·	古達員	支車 ? ?	1老退牛 1首, 黃狗 1匹
034	· · 11/24	姜汝敦	姜渭道	祖上傳來	·	加樂里內	· ?	農 ? 1首, 正木 ? 加樂里
035	· 40(1714) 3/6	高繼順	高世重	凶年	妻家傳來	者久木員	粟 5升	·
					妻邊別得	道叱水員	支車 5斗	雌牛 1首
036	· 40(1714) 3/29	秦佑察	高汝立	·	妻 給 得	長田西北邊	支車 15斗	雌牛 1首 長田
037	· 46(1720) 4/3	高尙一	姜渭老	費用所致相	換 田	長田里內員	支車 9斗	雌牛 1首, 正木 4疋 長田
038	· 46(1720)11/4	金福安	文順逸	還上	母邊給給	里內員	麻子 2斗	皮穀 1石
039	? ? ?/29	李才允	姜渭道	·	父前傳得	德石員	粟 2石	粟 20斗
040	경종 1(1721) 4/3	高汝立	姜渭老	農牛必要	祖上流來	眞木員	皮車 5斗	雌牛 1首 長田里
041	· 2(1722) 7/28	高智興	·	貧寒	買得 田	楮古木員	粟種 6升	·
					買得 田	頓水員	皮車 5斗	牛 1首
042	영조 1(1725) 2/5	姜連崙	姜文岐	凶年	初謁別得	長田里北邊	皮車 8斗	正木 2疋, 男衣 2疋, 正石
043	· 1(1725) 8/27	姜仲望	姜渭老	別有用處	父前別得	亭代基員	粟 2斗 題	太 1疋 (正木 4疋價)
044	· · 10/29	高宗頤	姜渭老	費用所致	掃 墳 條	能先員	租種 2斗	正木 4疋 (2破塚) 長田里
045	· 2(1726) 1/30	梁信贊	姜渭老	貧窮	給 得 田	長田里內員	皮車 45斗	租種 4斗, 9畝 3疋, 正木 1疋
046	· · 3/4	金召吏	姜渭老	凶年	父前 給 得	里內員	皮車 1斗	雌牛 1首, 綿布 1疋
047	· 3(1727) 2/20	李召吏	姜渭老	貧寒貸食	給 得	屹田員	皮車 1石	雌牛 1首 長田里
048	· 5(1729) 3/20	任世秀	姜渭道	費用所致	買得	遠場員	皮車 1石	正木 5疋
049	· · 7/25	夫 氏	姜渭道	家計窮迫	買得	明月□□	租種 15升	正木 8疋 明月
050	· 7(1731) 2/8	奴海立	姜渭老	窮迫所致	妻邊傳來	來賴伊金河田	粟種 5升	皮穀 2斗, 雌牛 1首
051	· · 9/2	姜連允	姜渭老	官債	祖 上 田	加時水員	皮車 1斗	? 1疋 長田里
052	· 9(1733) 2/24	高汝立	姜渭老	貧寒	買 得 田	□木山員	皮車 15升	正木 1疋 長田里
053	· · 6/15	梁世贊	梁振贊	凶年	祖 上 田	長田能先員	皮車 24斗	雌牛 1首, 破子 1匹, 支車 20斗
054	· · 7/22	金泰韻	梁輔明	喪需所入	耕食	坪代員	粟種 4升	稻板 1部 長田里
055	· · 7/23	梁輔明	姜渭老	費用所致	買得	坪代員	粟種 4升	正木 1疋, 稻板 1部 長田里
056	· 10(1734) 1/28	金時進	姜渭老	值此凶荒	祖上傳來	亭子基員	粟種 5升	5疋 入 黑 白 正木 ? 尺 長田里
057	· · 2/20	梁致安	姜渭老	當此荒年	給 得	公泉味員	租種 1斗	雌牛 1首 水山里
058	· 11(1735) 2/2	金弼周	姜渭老	費用所致	祖上傳來	泥田員	租種 7升	正木 1疋, 費穀 10斗 水山里
059	· · 2/12	朴順厚	姜渭老	費用所致	祖上流來	丁古水員	租種 3升	正木 1疋, 皮穀 10斗 長田里
060	· · 3/15	金時進	姜渭老	凶年	初謁別得	停自代員	車種 7升	粟 4石 長田里
061	· · 4/6	梁遇孟	姜渭老	貧窮	祖先祭條	流水猪水員	租種 7升	雞穀 17斗, 大樽 20尺, 麻布 1疋
062	· · 11/6	姜厚玄	아무개	貧寒	買 得 田	□□代員	皮車 3斗	正木 1疋 長田里
063	· 12(1736) 1/30	朴恒寶	姜渭老	費用所致	買 得 畜	公泉員	租種 7升	麻布 2疋 水山里

朝鮮後期 濟州西北地域 田畵文記의 研究

番	放賣年月日	賣渡者	買受者	放賣事由	取得經緯	地境	作物面積	價格表示, 其他
064	15(1739) 8/8	金就臣	朴氏	費用所致		亭自基員	粟種 1升	正木 30尺 長田里
065	17(1741) 3/29	文順逸	姜聖翁	情意可憐	買得田	里內員	皮車 3斗	正木 1疋, 粟 2石
066	11/14	高處伯	姜渭老	費用所致	買得田	亭自基員	粟種 1升	正木 30尺 長田里
067	11/14	姜召吏	姜渭老	貧寒	外邊流來	長田里內員	皮車 3升	正木 1疋 長田里
068	18(1742) 1/8	張後昌	姜渭老	凶年	別得	甬音水員	番租 4升	7升麻和疋, 正木疋 水田里
069	12/29	李才允	姜氏	貧窮所致	買得	下院員	皮車 2斗	正木 1疋
070	19(1743)11/14	文世俊	姜渭道	還上備納	父前給得	里西邊員 有花林員	皮車 7斗 粟 1升	正木 2疋, 家猪 2體
071	21(1745)11/28	高元昌	姜聖翁	還上備納		祖父母門路	皮車 2升	粟 斗
072	11/28	文有石	梁義贊	費用所致		水田員	皮車 8斗	板財 1箇
073	22(1746) 6/10	奴世公	야우개	還上	父前給得	家基	麻子 2斗	正木 4疋30尺 加樂里
074	23(1747) 4/2	金振堅	姜渭老	值此荒年	祖上流來	大連指員	粟種 4升	莊馬, 木 1疋 長田里
075	24(1748) 2/?	梁貴成	姜渭老	貧寒	祖上流來	月羅頂員	皮車 1石	農牛 1首 長田里
076	25(1749) 6/2	梁義贊	姜渭老	凶年	買得	水田員	皮車 8斗	自弊騎馬 1匹 長田里
077	12/18	梁召吏	姜渭老	逃家	母前給得	長田里內員	麻子 7升	雌牛 1首 長田里
078	? ? 2/17	梁召吏	姜渭老	均役米	買得	能先員	租種 2斗	孕婦胎疋, 正木疋 長田里
079	26(1750)11/27	金尙白	姜德翁	還退	買得	松落員	粟種 8升	騎雌馬 1匹, 木 2疋
080	29(1753) 3/16	梁仁赫	金尙白	切有用處	妻邊給得	松落員	粟種 8升	正木 5疋
081	30(1754) 3/3	金時永	奴今先	改葬	祖母山田	花松員	皮車 4斗	木綿 20尺 流水岩
082	33(1757)12/10	洪碩九	姜應期	當此荒年	祖上傳來	開亦只旨員	粟種 5斗	正木 1疋30尺
083	36(1760)12/?	安世位	俞復遠	費用所致	祖上流來	東好旨員	粟種 4升	正木 3疋
084	37(1761) 2/15	成取仁	俞復遠	費用所致	流來給得	念水旨員	粟種 15升	正木 4疋
085	40(1764) 1/19	梁召史	許大成	還上備納	家坐外田	能先員	皮車 1石	正木 4疋
086	11/26	金德完	梁元發	還上備納	買田	石萬以員	粟 3升	正木 1疋
087	41(1765) 1/25	金衡鎔	姜大翁	父田價	買得田	到隱員	皮車 3斗	正木 1疋
088	7/6	梁元道	姜大翁	費用所致	掃墳條	建南木員	皮車 2斗	農雌牛 1首, 雄牛 1首
089	8/10	梁召史	許大成	生理未由	相換	能先員	皮車 5斗	正木 3疋半 長田里
090	? ? ?/?	姜厚敏	許大成			地境田員	皮車 12斗	雌牛 1首, 木 15尺 長田里
091	45(1769)11/30	張永漢	姜永完	當此荒年	相換	宗木洞員	皮車 13斗	正木 3疋 牛路里
092	46(1770) 8/7	姜應周	姜大翁	還上備納	掃祭條田	別月出員 東內田員	皮車 3石 粟 9斗	正木 19疋
093	49(1773)11/20	姜氏	金韻	費用所致	給得田	領浦下屹田	粟種 7升	正木 2疋
094	영조40·50년 7/20	朴聖由	高召吏	費用所致	買得田	正泉員	粟種 4升	正木 2疋 長田里
095	51(1775)11/29	金亨斤	姜應新	費用所致	父給得田	城田員	皮車 1石	正木 3疋10尺
096	52(1776) 8/16	高漢翊	姜應新	費用所致	給得田	眞木員	粟種 4升	正木 6疋
097	12/10	高召吏	高莫先		父別給田	所臥木員	皮車 10斗	正木 1疋
098	정조 2(1778)10/30	梁起峇	姜應新	費用所致		長同山員	粟種 1斗	正木 3疋
099	9(1785)12/8	玄召史	姜應新	費用所致	買得	公泉員	粟種 4升	正木 3疋 長田里
100	11(1787)11/19	姜進昌	야우개	費用所致		公泉員	粟 5升	正木 2疋 水山里
101	15(1791) 1/26	許大成	姜應新	衣服無路	買得	地京田員	皮車 13斗	正木 2疋半 長田里
102	16(1792) 2/4	朴上成	姜東起	費用所致	祖母別給	宗南洞員	皮車 5斗	正木 3疋24尺
103	9/7	姜永完	姜大翁	凶年	買得田	宗南洞員 同員	皮車 3斗 粟種 6升	雌馬 1匹
104	11/9	梁召史	姜應新	當此穀年	父給得田	代田	皮車 10斗	正木 6疋 長田里
105	12/19	許永發	姜應新	當此荒年	給得	能先員	皮車 25斗	正木 6疋 長田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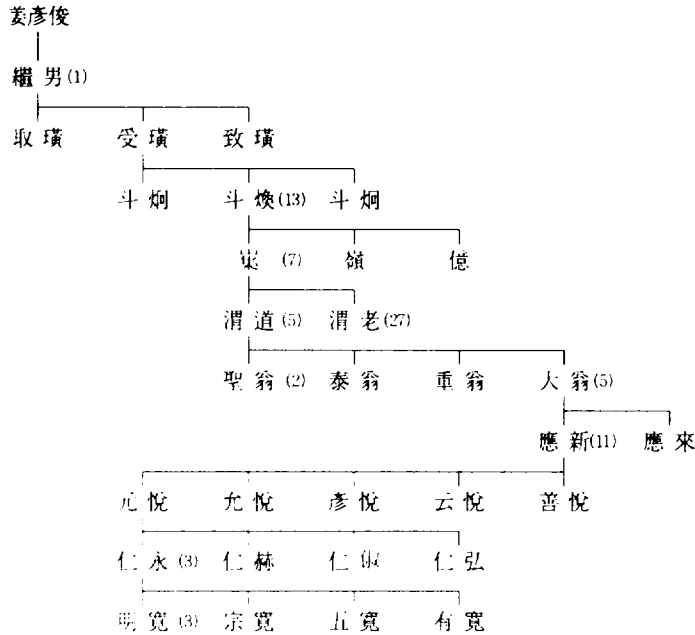
番	放賣年月日	賣渡者	買受者	放賣事由	取得經緯	地境	作物面積	價格表示, 其他
106	· 17(1793) 1/11	高召史	姜應新	當此殺年	相換	眞木洞山	粟種 7合	正木 1疋 長田里
107	· · 1/20	姜氏	姜大翁	如此殺年	流來	長田里內員	皮車 1石	正木 25疋 長田里
108	· 19(1795) 2/22	李處貴	姜應新	凶年	祖上流來	此南同山	粟種 5升	雌牛 1首 長田里
109	· · /25	姜永完	姜應新	負債報給	買得田		皮車 1石	
					買得田		皮車25斗	正木 7疋
110	· 21(1797) 8/16	梁召吏	姜遇仁	費用所致	買得田	巾奉員	皮車 4斗	正木 2疋
111	순조 1(1801)12/27	高漢清	姜應新	費用所致	祖上傳來	能先伊	1 夜味	正木 3疋
112	· 4(1804) 2/28	宋仁庚	高召吏	手外之致	買得	加沙只岳員	粟種 2升	正木 1疋10尺
113	· 13(1813) 4/13	朴大賈	金繼東	費用所致	買得田	地京田員	皮車 6斗	正木 4疋 長田里
114	현종 8(1842) 2/17	夫宗周	姜仁永	揮田還買	流來給得	上石戲田員	粟種 4升	白木 2疋 召吉里
115	· 11(1845) 4/10	姜仁弘	姜宗明	費用所致	流來給得	木橋旨員	粟種 4升	正木 □2疋 召吉里
116	· 13(1847) 3/13	朴汗守	姜宗明	費用所致	流來給得	水累治河山	皮車 4斗	白木 4疋20尺 長田里
117	철종 1(1850) 4/26	金在信	秦至煥	費用所致	買得田	古達伊員	皮車 1斗	白木 1疋10尺 長田里
118	· 2(1851) 3/24	李行振	林柏悅	費用所致	祖上流來	塊野戲員	粟種 8升	正木 45疋
119	· 11(1860) 2/4	梁道明	姜宗明		給田	文掌儒洞山	粟種 3升	白木 8疋 長田里
120	고종 2(1865)12/4	林柏悅	姜仁永	換買附近	買得田	塊野戲員	粟種 8升	正木 57疋20尺
121	· 3(1866) 2/8	任順洪	姜仁永	費用所致	流來給下	臥岳員	皮車 5斗	正木 17疋 長田里
122	· 5(1868) 1/25	姜明寬	姜承魯	凶年	流來給給月	羅木田員	皮車 5斗	正木 10疋
123	광무 9(1905)12/18	姜在寬	李峻爽		買得田	故番田員	車種 6斗	錢文 245兩
124	? ? 7/4	高齊崙	?			廣水員番	租種 3斗	車 20斗, 農牛 1隻? 水田
125	? ? ?	金氏	姜應期	費用所致	相換	加樂里東邊	皮車 2石	正木 15疋 加樂里

1. 土地買入의 買受者別 分類

〈표 1〉에 나타난 내용을 買受者 별로 분류해 보면, 姜氏宅 사람들이 매수인으로 되어 있는 것은 86건이다. 여기에 매수자 부분이 탈락된 8건도 姜氏宅의 購買文書로 본다면 그 수는 무려 94건에 이른다. 나머지 31건은 姜氏宅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매수인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들 他人의 名義로 된 賣買文記가 姜氏宅에 전래되고 있는 것은 姜氏宅 사람들이 토지를 買入할 때, 「本文記并以」라 하여 賣物과 함께 本文記(舊文記)를 넘겨 주는 관례에 따라 賣渡人들로부터 讓渡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매매문기에 기록된 매수인들의 혈연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世系圖를 작성해 보면 〈표 2〉와 같다.

이 世系圖를 통해서 살펴보면, 매입한 건수는 姜渭老가 27건, 姜斗煥이 13건, 姜應新이 11건, 姜渭道와 姜大翁이 각 5건, 姜仁永과 姜明寬이 각 3건, 姜聖翁이 2건, 姜繼男이 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姜渭老의 경우, 그의 매입 토지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평생 田畝만을 구매하며 살았

〈표 2〉 土地賣買와 관계된 家系圖()은 건수



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답매매에 가장 열성적이었음을 엿볼 수 있다. 姜渭老와 關係해서는 말미에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그 외의 買受者로 姜文載(1건), 姜應期(2), 姜永完(1), 姜東起(1), 姜遇仁(1), 姜承魯(1), 姜氏(1) 등이 있으나 본 姜氏宅과 關係이 있는 사람들인 지, 그 소속을 파악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他姓의 매수자로는 金夢一, 徐起元, 高甫難金, 高泰義(太衣 2, 姜渭老의 妻父), 高信孟, 梁奇□, 朴振後, 高世重, 高汝立, 文順逸, 梁振贊, 梁義贊, 梁輔明, 朴氏, 金尙白, 奴 今先, 俞復遠(2), 許次成(3), 梁元發, 高召史(2), 高莫先(姜大翁의 雇工, 司占寺奴 果直), 金鎰東, 林栢悅, 李峻爽, 金韻□, 秦奎煥, 탈락(8) 등이 있다.

高召史의 召史는 良人의 부인을 가르키는 용어이며,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여자도 자신의 이름으로 토지를 매매하거나 소유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그러한 사실을 문서로 남길 수 있었다는 점이다. 더욱이 노비의 경우도 私奴婢, 官奴婢의 분명한 표현은 없으나 그들의 이름으로 토지를 매매할 수 있었다.

전답매매문기에 나타난 토지의 매매시기를 月別로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표 3〉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1년 내내 토지의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중에서

도 農閑期인 11월에서 이듬해 3월 사이에 매매된 것이 전체 125건 중 71건으로, 이 시기에 가장 활발하게 매매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토지매매가 주로 농한기에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만큼 곡식이 경작되고 있을 때에는 전답의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표 3〉 王代別 賣買頻度數와 月別 賣買頻度數

月	要用	還上	喪葬	貧凶	賠償	同色馬	兵物	秩木	農牛	官債	造家	衣服	負債	距離	均役	未詳	計	王代	計
1	4	1	1	4								1					11	宣祖	1
2	5			8										2			15	孝宗	5
3	6		1	8													15	顯宗	9
4	4	1		2					1								8	肅宗	24
5	1			1													2	景宗	2
6		2		2	1												5	英祖	56
7	3		1	1													5	正祖	13
8	5			2		1											8	純祖	3
9		2		1		2	1										6	憲宗	3
10	4					1			1								6	哲宗	3
11	9	4		4													17	高宗	3
12	6			5				1									13	光武	1
未詳	3		1	1	3								1	1	1	3	14	未詳	2
計	49	11	4	41	1	4	1	1	1	1	1	1	1	3	1	3	125		125

2. 土地放賣의 事由

매매문기에 나타난 放賣事由는 要用所致가 44건으로 가장 많고, 貧寒과 凶年이 40건, 還上 11건, 同色馬 4건, 喪債 4건의 순이었다. 이외에도 代物賠償, 秩木·農牛·兵物·衣服 등의 마련, 官債와 負債, 均役米 納付, 造家로 말미암은 것도 있었다.

요용소치는 요긴하게 돈을 쓸 일이 있어서 밭을 판다는 내용이나 그 용도가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지 않은 가장 애매한 경우에 속한다. 그러나 이를 제외하고는 가난한 데다가 흉년을 당하여 살아나갈 방도가 없어서 밭을 판다는 등 구체적인 방매의 원인을 제시하고 있다.

還上 때문에 전답을 방매하는 경우도 자못 많다. 還上(俗稱 환자)는 춘궁기에 司倉으로부터 還穀을 대여 받아 먹은 뒤, 가을 秋收기 끝난 뒤에 약간의 이자를 붙여서 還納하는 것을 말한다. 결국 官으로부터 꾸어 먹었던 환곡을 갚을 길이 없는 데다가, 흉년이 겹쳐 생계가 곤란해지자 조상으로부터 물려 받은 자신 소유의 전답을

팔아서 이를 해결하려는 것이었다. 그러한 사유를 매매문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뒤의 ()안 숫자는 매매한 날자이나 이는 備納 시기와도 관계된다.

- (3) 矣身受食還上 納官爲難仍于(6/26)
- (24) 所食還上太壹石 出處無路乙仍于(9/5)
- (38) 矣身名下新·舊還上 嚴捧之時 勢難備納乙仍于(11/4)
- (39) 素以至貧 多食還上 辦納無路乙仍于(?/29)
- (70) 貧寒之身 還上辦備無路乙仍于(11/18)
- (71) 矣身當此荒年 還上備納 出處無路乙仍于(11/14)
- (73) 貧寒之中 值此荒年 還上及生涯出處無路仍于(6/10)
- (85) 當此荒年 所食還上 備納勢難仍于(1/9)
- (86) 當此凶年 生涯及還上備納 出處(無)路乙仍于(11/26)
- (92) 當此荒年 許多還上所食 無生涯路乙仍于(8/7)

이상의 내용으로 보면 還上의 備納 시기는 夏穀 수확이 끝나는 6월에서부터 다음 해 정월까지 계속되고 있다. 내용 중 新·舊還上은 당해 연도에 대여받은 新還과 상환연도가 지난 舊還을 뜻한다.

同色馬의 備納은 他道에는 없는 것으로 당시 牧子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었다. 李健의 「濟州風土記」에는 동색마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섬 안의 國馬는 여러 곳에 놓아 기르는데 兩縣(大靜·旌義)도 또한 그러하다. 馬屯이 매우 많아서 天地玄黃으로 글자를 배정하여 屯名을 붙인다. 한 屯의 말은 적어도 백여 필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으나 牧子는 많아도 23인에 불과하다. 이른바 목자는 말을 받아서 이를 관리하며 기르는 자이다. 여름과 가을의 풀이 자랄 때에는 말들이 죽어 쓰러질 염려가 없으나 嚴冬이나 초봄과 같이 풀이 말라 죽을 때에는 말들이 굶어서 죽는 숫자를 이루 다 셀 수가 없다. 만일 致死한 말이 있을 경우에는 목자는 즉시 가죽을 벗겨서 官에 바치는데, 이 때 官에서는 馬籍과 가죽을 참고하여 毛色이 서로 부합된 뒤에야 곧 그 가죽을 받아서 故失馬(事故馬)로 마적에 올린다. 혹 毛色이 틀리거나 毛皮에 損傷이 있을 경우에는 물리쳐서 받지 아니하고 즉시 같은 색깔의 말을 목자에게 징수하는데 이를 同色馬라 한다. 목자는 너털너털 해진 옷을 입은 사람으로 변상할 말을 살 때에는 힘이 미치지 못하여 자신의 밭과 農牛를 다 팔아버리며, 이것도 부족하여 釜鼎과 農器와 같은 물건들을 모조리 팔아서 겨우 사 바친 뒤

에 말이 만일 또 斃死하면 또 이와 같이 하여 5,6필 내지 10여 필에 이른다. 備納하는 자가 이미 그 힘이 다하여 어찌할 수 없게 되면 官家에서는 그의 遠近一族을 뽑아내어 변상할 말을 나누어 배정하여 徵納하는데 그 役이 참으로 괴롭다. 한 번 이 任을 거치면 破産하지 않는 자가 없으니, 그 원통함을 호소하며 근심하고 탄식하는 모습은 참아 볼 수가 없다. 도랑에 넘어지고 골짜기에 쓰러져 죽는 말이 있음에 이르러서는 그 族屬된 자도 역시 그 징납을 이겨내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 목자를 죽여서 모면하고자 하는 자도 간혹 있기 마련인 것이다.”

그 사유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3) 子奴金男參兄弟等 牧子以 名字同色馬 他無出處乙仍于

(14) 子奴秃卜亦 別玄字牧子以 名字同色馬 他無出處之路乙仍于

(15) 矣子奴億男亦 名字同色馬徵捧時 他無出處<乙>仍于

(16) 子億男名字同色馬 <他無出處乙仍于> 同人處 駟雌馬禾參壹匹<乙 賃得納>點後 他無報給乙仍于

이외에도 자신 소유의 전답을 동일 지경에 집중시켜 편리하게 관리하기 위해 밭을 파는 경우가 있었다. 즉 밭이 먼 곳에 있는 소치로(112번), 혹은 밭이 지경 밖에 있어서 농사짓기가 어려우므로 거리가 가까운 곳에 있는 밭과 相換하기 위해(120번) 밭을 팔아버리는 경우가 있었으며, 또 喪債로 말미암아 토지를 방매하는 경우도 있었다. 남의 토지에 어머니를 매장한 값으로(4번), 當祖父의 葬地가 不吉하여 다른 곳으로 改葬하기 위해 빌려 쓴 棺과 盖板의 값을 갚아주기 위해(81번), 아버님의 山所 값을 마련하기 위해(87번), 後嗣 없이 사망한 누이의 喪需를 마련하기 위해(54) 밭을 팔아버리는 경우가 그것이다.

뿐만 아니라 문서번호 12번의 경우는 賣渡者가 牧子인데, 그는 자신이 관리하던 屯馬가 買受者의 보리밭에 들어가 싹이 나서 한창 자라는 보리를 먹어버렸으므로 이를 보상하기 위해 밭을 팔고 있었다. 代物報償인 셈이다. 혹은 부친이 牙兵의 役으로 兵物을 마련하기 위해 빌린 藥丸 값을 갚기 위해(21번), 조상의 未分奴婢를 官庭에 訟事하여 골고루 分給할 때 그에 소용되는 秩木(수수료)을 마련하기 위해(30번) 밭을 파는 경우도 있었다. 문서번호 40번은 農牛를 마련하기 위해, 51번은 官債를 납부하기 위해 밭을 팔고 있으며, 嫡子와 庶子の 均役米를 마련하기 위해(78번), 買得하

여 갈아 먹던 밭을 祖上田이라 하여 還退를 원하므로(79번) 밭을 팔고 있었다. 더욱이 101번의 경우는 年老하여 衣服을 마련할 길이 없자 자신이 매입했던 밭을 파는 경우가 있었으며, 109번은 흉년을 당하여 많은 負債를 갚아 줄 길이 없어서 밭을 팔고 있었다.

3. 土地의 取得經緯

그러면 賣渡되고 있는 토지는 어떻게 取得했던 것일까? 매득문기의 실제 건수는 125건이나 내용상으로는 137건에 달하였다. 그 취득경위와 순위를 살펴보면 買得田이 31건, 祖上傳來 30건, 貰得[衿得]이 25건, 別得 혹은 別給이 11건, 相換과 掃祭條가 각 6건, 기타 未詳이 28건의 순이었다. 매득전은 글자 그대로 남에게서 산 받으며, 조상 전래는 祖上傳來, 祖上流來, 祖上用, 父邊祖上 등으로 표기하여 취득자가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밭을 물려받은 경우도 있었으나 妻家傳來, 妻邊傳來, 母邊傳來, 外邊傳來라 하여 처가로부터 처 몫으로, 혹은 외가로부터 물려 받은 것도 있었다. 貰得은 조상으로부터 자신의 몫으로 유산을 물려받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에 貰得[衿給]이라고도 표기하였다. 즉 이는 유산의 몫을 준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 경우도 막연히 貰得이라 한 文記가 있는가 하면 祖上衿得·父傳衿得·母邊衿得·母傳衿得 등으로 표기하여 조상으로부터, 혹은 아버지, 외가, 어머니 등으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았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 있었다. 別得은 成婚日이나 初謁日, 또는 과거에 及第하여 특별히 유산을 물려받는 것을 말하는데, 막연히 別得, 혹은 祖母別給, 妻邊別給, 父別給이라 표기된 경우도 있었다. 別給은 貰得의 경우와 같이 특별히 유산을 물려준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는 成婚·初謁·登第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이며, 실제로는 이들도 조상전래에 속한다고 하겠다. 掃祭條는 조상의 祭條나 掃墳條를 말하며, 미상은 그 부분이 탈락되었거나 표기가 안된 경우이다.

4. 賣買價格의 表示

매매대금은 무엇으로 지불했는 지 이에 대해서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전답의 매매 가격은 木棉(6升木·8升木·9升木·正木·步(兵)木·細布·綿布·價布·白木·木棉 등으로 표기)을 중심으로 하여 麻布(4升麻布·7升麻布·麻布 등으로 표기)·綿紬(9

升綿紬) 등의 布木과 牛(雄牛·雌牛·孕雌牛 등)·馬(雄馬·雌馬·騎馬·白斃騎馬 등)·黃狗·家猪·農牛 등 가축과 皮物(雌牛皮·雌鹿皮 등)·穀食(雜穀·粟穀·皮牟·太·皮穀 등으로 표기) 및 綿昌衣·5升入鼎子·棺板·錢文 등으로 표기되고 있었다. 그러나 전문의 경우 1900년대에 와서야 나타나고 있다. 전문은 곧 銅錢(常平通寶)으로, 이는 숙종 4년(1678) 정월부터 鑄造되기 시작한 화폐이다. 그러나 제주지방에서는 동전이 별로 유통되지 않았던 것이다. 즉 상품유통에 있어서나 혹은 상품이 격을 표시하는데 있어서 錢文은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음을 의미한다.

5. 姜渭老의 土地買入

끝으로 姜渭老의 토지매입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姜氏宅에는 그의 準戶口가 현재 6장이 전해 오고 있다. 준호구는 호구신고서인 戶口單了와는 달리 이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官에서 발급하는 일종의 戶籍謄本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전해 오고 있는 준호구 6장을 발급받았던 용도는 알 길이 없다.

康熙59년(숙종46년, 1720)12월右面第(탈락)校直姜渭老(25세, 丙子生, 숙종 22, 1696)
 雍正 3년(영조 5년, 1729)12월右面(탈락)校直姜渭老(37세, 癸酉生, 숙종 19, 1693)
 乾隆 3년(영조14년, 1738)12월右面第上(탈락)渭老(46세, 癸酉生)
 乾隆 9년(영조20년, 1744)12월右面中嚴莊里第15統(탈락)(52세, 癸酉生)
 乾隆18년(영조29년, 1753)12월右面第水山里第16統(탈락)姜渭老(61세, 癸酉生)
 乾隆21년(영조32년, 1756)12월右面第水山里第14統(탈락)渭老(64세, 癸酉生)

이상의 準戶口를 살펴보면, 康熙 59년에 발급받은 것에는 출생연도에 착오가 있으나 그 이하는 모두 바르게 작성되어 있다. 즉 이들 준호구를 통해서 姜渭老의 출생연도가 숙종 19년(1693, 계유생)임을 파악할 수 있다.²²⁾ 따라서 매매문기상에 나타난 최초의 전답매입의 시기는 숙종 46년(1720) 4월 3일부터이다. 이 때 그의 나이는 28세이다. 그리고 그의 나이 69세가 되는 영조 37년(1761) 7월 17일에 그의 재산을 조카인 姜大翁에게 넘겨주고 있고, 실제 매매문기상에는 그의 나이 57세가 되는 영조 25년(1749) 12월 18일경에 마지막 매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어간 약 30년 동안에 29회, 31필지의 토지매입이 이루어졌다. 문기의 탈락이 심하여 정리하지 못한 것

22) 姜大翁의 準戶口를 통해서 그가 73세 이상 생존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을 염두에 두면, 매년 1필지 이상의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물론 그의 재산형성은 和會에 의한 상속과 妻家로부터 妻 몫으로 상속받은 田畝도 있었다.²³⁾ 그의 토지매입 내용을 정리하면 이러하다.

皮牟 13필지 5石 6斗지기, 粟種 7필지 4두 5升지기, 租種 9(실제 10)필지 9두 3승지기, 麻子 1필지 7승지기로 합계 30필지(실제 매입은 31필지) 6석 5두 5승지기를 매입하였다. 토지를 매입하면서 지불한 가격은 소 30두, 말 3필, 正木 25필반 30척, 木棉 30필 148척, 綿紬 44척, 麻布 4필, 술 1좌, 棺板 1부, 皮穀 12두, 雜穀 3석 12두, 粟 4석이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後嗣가 없었다. 따라서 당시 姜大翁에게 재산을 넘겨 주면서 작성했던 文記(許與文)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乾隆貳拾陸年辛巳 柒月拾柒日 □□□姜大翁處 許與文
 有許與文事段 吾身天賦險惡 □□□生 兄之末子三歲兒 定後收養是如可 年當十五
 天運不幸 □□□更無奈何 母欲死地 惡命未盡 然且吾矣夫妻年當七十 俱抱身□
 □□□生無所倚 死亦失路 豈不悲痛哉 勢不得已 姪子大翁猶同己出 吾矣夫妻生養家
 奉祀 委任擔當次 畧于田畝等物 一半掃墳祭條成置 而一半及家與家財·駒犢等物竝只
 同大翁處別許爲去乎 依此執持爲乎矣 所謂掃墳祭條之物段 勿爲輕分 而內〈外孫中〉專
 流後嗣是遺 勿許外人事并以 永久施行事
 一 吾矣同生等和會時 衿得是在 上加樂里以□邊 送落員 粟種壹斗伍升付 及妻父前衿
 得是在家坐田 皮牟參斗付 及門□□□妻外三寸叔母金召吏處買得田 皮牟壹斗付 及家
 以南邊 妻外四寸姜召吏處買得田 皮牟參升付 及家以北邊 梁召吏處買得田 麻子柒升付
 及長田里內員 高尚處買得田 皮牟玖斗付 及同田一邊梁信贊處買得田 皮牟肆斗付 及
 里以南邊 妻父前別得田 古達員 皮牟壹石付 及加時水員 高萬玉處買得田 粟柒升付 及
 里以東邊 能先員 尹商善處家基代相換田皮牟壹石玖斗付 及同員 梁召吏處買得畝 貳夜
 木〈味〉合租種貳斗付 及流水岩里以北邊 猪水員 梁遇孟處買得畝貳夜木 合租種柒升付
 及里以西邊 在公田員 梁召吏處買得田 皮牟壹石付 及水山里以北邊 坪代員 朴恒寶處
 買得畝 租種柒升付 及同員 金弼周處買得畝 租種柒升付 及補音水員 張厚昌處買得畝
 租種肆升付只等物 吾矣夫妻掃墳祭條施行爲齊

23) 拙稿 : 「朝鮮後期 濟州地方 分財文記의 研究(Ⅰ)-長田里 姜泰福氏 所藏文記를 중심
 으로-」 『耽羅文化』 18,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1997, pp. 215~244

一 長田里以北邊 眞木員 高汝立處買得田 貳庫合皮車陸斗付 及西邊 亭在基員 姜仲望處買得田 粟種貳斗付 及同員 金時進處買得田 粟種伍升付 及同員 梁召吏處買得田 粟壹斗伍升付 及里以南邊四命田 李召吏處買得田 皮車壹石付 及□伊基員 妻父前衿得田 皮車伍斗付 及馬古里水員 朴順厚處買得畝貳夜未 合租種參升付 及里以東北邊 月羅木員 梁貴成處買得田 皮車壹石付 及里以西邊 無自北只員 李召吏處買得田 粟種壹斗付 及水山里以北邊 公泉員 梁致安處買得畝租種壹斗付 及家與家財駒犢等物竝只 吾矣夫妻生養次 同大翁處 別許爲去乎 依此執持者

一 花松員 婢孆今處買得田 皮車肆斗付段 妻母主爲祭 妻外姪子姜道齊處 別許是齊

一 兩邊親姪等 成婚初謁日 每人□□壹庫田 別許爲有置 或有雜談者是良置 持此文記下正事

財主 白筆執 留鄉別監 姜渭老(手決)

즉 이 許與文은 乾隆 26년 辛丑, 즉 英祖 37년(1761) 7월 17일에 財主인 留鄉別監 姜渭老가 白筆로 姜大翁에게 재산을 넘겨주면서 작성해 준 문서이다. 문서의 序頭가 다소 탈락되어 있으나 재산을 넘겨주게 된 사유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 몸의 타고난 운명이 험악하여 형님의 末子인 세 살난 아이를 後嗣로 정하여 거두어 기르다가, 나이 15살에 天運이 불행하여 (일찍 사망하니), 다시 어찌할 방도가 없어서 죽으려고 하여도 죽을 만한 곳이 없어 모진 목숨이 다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우리 夫婦의 나이가 70을 당하매, 살아도 의지할 곳이 없고 죽으려고 하여도 죽지 못 하였으니, 어찌 비통하지 않겠는가. 하는 수 없이 조카 大翁이 오히려 同氣와 같으므로 우리 부부의 제사를 生家와 같이 받들도록 위임하여 담당케 하기 위해 약간의 전답들을 나누어, 반은 掃墳祭條로 만들어 두고, 나머지 반 및 집과 家財·駒犢 등을 아울러 同 大翁에게 따로 넘겨 주는 것이니 이에 따라 소유하되, 이른바 掃墳祭條의 재물은 가벼히 여기지 말고 내·외 자손 중 오로지 후사에게만 전하고, 外人에게는 넘겨 주지 말 것을 아울러 영원히 당부한다.”

위 내용을 정리하면 넘겨 주는 목적이 네 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첫째는 夫妻의 掃墳祭條, 두번째는 夫妻가 살아 나가기 위해 同 大翁에게 따로 넘겨 주는 몫, 세번째는 妻母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 妻外姪子인 姜道齊에게 別許하는 몫(買得田인 花松員의 皮車 너 말부치기), 네번째는 내외 양쪽 親姪들의 成婚·

朝鮮後期 濟州西北地域 田畝文記의 研究

初謁日에는 每人에게 밭 한 곳을 따로 넘겨 주라는 것이다. 집과 家財·駒犢 등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의 분배상황은 <표 4>와 같다.

<표 4>

區分	地 境	取 得 經 緯		作 物	面 積	備 考(分財文書와 買得文書 番號)
夫 婦 掃 墳 條	上加樂里 送落員	同生等 和會	衿 得	粟種	1斗500升	본재문서 228쪽
		妻父前 衿得	家坐田	皮牟	3斗	
	門□□□(長田里內員)	妻外三寸叔母 金召吏	買得田	皮牟	1斗	46 영조2년(1726) 3/4
	家 南邊(長田里內員)	妻外四寸 姜召吏	買得田	皮牟	3升	67 영조17년(1741) 11/14
	家 北邊(長田里內員)	梁召吏	買得田	麻子	7升	77 영조25년(1749) 12/18
	長田里內員	高尚圖	買得田	皮牟	9斗	37 숙종46년(1720) 4/3
	同田 一邊(長田里內員)	梁信贊	買得田	皮牟	4斗	45 영조2년(1726) 1/30
	長田里 南邊 占達員	妻父 前	別得田	皮牟	1石	본재문서 230쪽
	加時水員	高萬玉	買得田	粟	7升	
	長田里 東邊 能先員	尹商著 家基代	相換田	皮牟	1石9斗	
	同 員	梁召吏	買得畚	租種	2斗	78 ? 2/17
	流水岩里 北邊 猪水員	梁遇孟	買得畚	租種	7升	61 영조11년(1735) 4/6
	里 西邊 在公田員	梁召吏	買得田	皮牟	1石	
	水山里 北邊 坪代員	朴重賈	買得畚	租種	7升	63 영조12년(1736) 1/30
同 員	梁弼周	買得畚	租種	7升	58 영조11년(1735) 2/2	
補音水員	張厚昌	買得畚	租種	4升	68 영조18년(1742) 1/8	
大 翁 處 別 許	長田里 北邊 眞木員	高汝立	買得田	皮牟	6斗	40 경종1년(1721) 4/3
	西邊 亭在基員	姜仲望	買得田	粟種	2斗	43 영조1년(1725) 8/27
	同 員	姜時進	買得田	粟種	5升	56 영조10년(1734) 1/28
	同 員	梁召吏	買得田	粟	1斗	5
	里 南邊 四命田	李召吏	買得田	皮牟	1石	47 영조3년(1727) 2/20
	□伊基員	妻父 前	衿得田	皮牟	5斗	
	馬古里水員	朴順厚	買得畚	租種	3升	59 영조11년(1735) 2/12
	里 東北邊 月羅木員	梁貴歲	買得田	皮牟	1石	75 영조24년(1748) 2/?
	里 西邊 無自北只員	李召吏	買得田	粟種	1斗	
水山里 北邊 公泉員	梁致安	買得畚	租種	1斗	57 영조10년(1734) 2/20	

IV. 結 論

이상에서 필자는 복제주군 애월읍 장전리에 거주하는 姜泰福氏 소장의 田畝賣買 文記 125건을 일괄하여 정리하여 보았다. 그 결과 내용면에서는 필자가 그 동안 정리 해 온 전답매매문기와 관련된 다른 세 편의 論考³⁰⁾와 별차가 없었다. 따라서 필자는 本稿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정리해 온 네 편의 논문을 통해서 朝鮮後期에 濟州島 지방에서 행해진 전답매매의 실태와 매매과정을 통해서 나타난 제주도민의 生活史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다.

즉 전답매매문기는 제주도의 경우도 전국적으로 통용된 記載樣式을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매매의 시기, 放賣의 사유, 취득의 경위, 면적(혹은 필지), 四標, 재배작물, 매매가격, 本文記의 讓渡與否 등에 관한 내용이 거의 일관되게 서술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필자도 이에 주안점을 두고 지금까지 매매문기에 나타난 이상의 여러 가지 내용을 분석하여 정리해 왔다.

특히 本文記는 賣買文記와 함께 전답취득의 경위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문서이다. 또한 여러 가지 방매사유에서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것은 당시의 中農層, 특히 小地主層에는 가난한 자가 많았다는 것이다. 여기에 흉년이 겹쳐 겪어야 할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同色馬와 還上의 부담, 喪債나 墓地의 負債, 官債나 私事負債를 보상할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은 자신 소유의 전답을 방매함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더 나아가 조선조 후기에 있어서 양반·부호층의 土地兼併을 촉진시켜 貧富의 차이를 현격히 하고, 小作制의 발전을 초래케 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전답매매문기에 대한 연구는 커다란 경제사적 의의를 갖는다고 하겠다.

앞으로의 과제는 매매문기에 나타난 漢字化된 지명의 고유명칭으로의 복원작업과 함께 재배작물에 따른 토질분석, 토지면적에 대한 지역간의 차이, 토지매입자 집안의 家系圖 작성을 통한 賣渡者와 買受者의 관계 및 그들의 신분에 대한 분석도 다루어 져야 할 것이다.

-
- 24) 「朝鮮後期 濟州田畓文記의 研究」 『耽羅文化』 13, 1993. 2. pp. 81~123.
 「朝鮮後期 濟州島 土地賣買의 實狀」 『耽羅文化』 16, 1996. 2. pp. 113~161.
 「朝鮮王朝時代の濟州島での土地賣買」 『地理』 43-5, 古今書院 東京, 1998. 5. pp.37~43.